

연구용역보고서

농업정책자금 조달 및 운용방안 개선

2004. 9



韓國金融研究院
Korea Institute of Finance

— 목 차 —

I. 서론	1
II. 우리나라 농업정책금융 현황	2
1. 농업정책금융 개요	2
2. 주요 농업정책자금별 현황	13
3. 농업종합자금	22
4. 이차보전제도	27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9
6. 대손보전기금	39
III. 외국의 농업정책금융	49
1. 프랑스 농업정책금융 현황	49
2. Credit Agricole	59
3. 미국의 농업정책금융	62
4. 일본 농림어업금융공고	68
IV. 우리나라 농업정책금융의 개선방안	75
1. 농업정책금융 취급 금융기관 확대	75
2. 농업정책자금 관리방법 개선	88
3. 농업정책자금 채원 확대 및 이차보전제도 개선 ..	90
4. 신용보증제도 개선	95
<부록 1>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취급금융기관 선정	
<부록 2> 농업정책자금 대출현황(농협중앙회)	
<부록 3>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개방방안	

— 표 목차 —

<표 II-1> 농업정책자금의 사업별 대출실적	5
<표 II-2>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사업별 지원계획	6
<표 II-3> 2004년 정책자금 재원별 지원계획	7
<표 II-4> 기간별 연체채권 및 연체비율	8
<표 II-5> 연체비율 추세	8
<표 II-6> 2001년 부채대책 추진실적	9
<표 II-7> 2004년 농가부채 경감 특별대책	10
<표 II-8> 농협중앙회 대출금 중 정책자금 비중	11
<표 II-9> 정책자금대출의 실행 경로	11
<표 II-10> 농협중앙회 예수금의 정책자금투입 비중	12
<표 II-11> 농업정책자금의 신용보증 비율	12
<표 II-12> 평균수수료율 및 수수료 추이	13
<표 II-13> 농업정책자금 대출잔액	14
<표 II-14> 농축산경영자금의 재원구성	15
<표 II-15> 농축산경영자금 대출조건	16
<표 II-16>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대출조건	17
<표 II-17> 농업기계화자금 대출조건	18
<표 II-18> 농업기계화자금 지원실적	19
<표 II-19> 농업기계화자금 재원구성	19
<표 II-20> 농안기금 지원액 및 잔액 현황	20
<표 II-21> 축산발전기금 연도별 지원실적	20
<표 II-22> 축산발전기금 대출조건	21
<표 II-23> 농업종합자금제도의 주요내용	22
<표 II-24> 농업종합자금 대출조건	23
<표 II-25> 농업종합자금 대출현황	24
<표 II-26> 농업종합자금 자금별 대출실적	24
<표 II-27> 농업정책자금의 자금별 대출실적 및 비중	25
<표 II-28> 농업종합자금의 용도별 대출실적	25
<표 II-29> 농업종합자금 대출규모별 건수 및 지원금액	26

<표 II-30> 농업정책자금 종류별 연체비율	26
<표 II-31> 이차보전 기준금리 및 이차보전액 추이	28
<표 II-32> 농어촌특별회계 예산출연 현황	30
<표 II-33> 사무소별 취급업무	32
<표 II-34> 부분보증 적용대상자금 추이	33
<표 II-35> 보증대상자 및 1인당 한도	34
<표 II-36> 기준 보증료율	35
<표 II-37> 대손판정 현황	35
<표 II-38> 기금조성 및 기본재산 현황	37
<표 II-39> 기금 결산현황	38
<표 II-40> 대위변제 및 정부출연금 규모	38
<표 II-41> 농신보 여유자금 운용현황	39
<표 II-42> 금융기관별 대손보전 대상사업	41
<표 II-43> 보전대상자금 규모	42
<표 II-44> 부분보전대상대출금 추이	43
<표 II-45> 부분대손보전 대상대출금	43
<표 II-46> 2003년 기금출연 대상자금	44
<표 II-47> 연도별 기금출연 실적	44
<표 II-48> 연도별 기금조성 및 운용 실적	45
<표 II-49> 사업별 대손보전실적	46
<표 II-50> 2004년 부채대책 대상자금(농협)	47
<표 II-51> 대손보전기금 운용전망	48
<표 III-1> CA의 농업대출 현황	51
<표 III-2> 농업대출의 금융기관별 비중	52
<표 III-3> 농업정책대출의 금융기관별 비중	53
<표 III-4> 2003년 농업정책대출 금리	54
<표 III-5> 농업정책대출 조건	56
<표 III-6> 미국 농업정책금융 예산	64
<표 III-7> 미국 FSA의 농업정책금융 종류	66
<표 III-8> 농림공고 산업별 대출실적	68
<표 III-9> 농림공고 농업대출 추세	69

<표Ⅲ-10> 농업정책금융 대출별 비중	70
<표Ⅲ-11> 대항금융기관 현황	71
<표Ⅲ-12> 금융기관별 농업대출잔액	72
<표Ⅲ-13> 농업정책자금별 대출실적	73
<표Ⅲ-14> 농림공고 신용그룹별 대출현황	74
<표Ⅳ-1> 은행 지점 분포	79
<표Ⅳ-2> 우선개방 대상 자금 대출현황	85
<표Ⅳ-3> 정책금융의 대출취급수수료 및 대손보전공제금 현황	87
<표Ⅳ-4> 은행의 예수금 및 대출금	91
<표Ⅳ-5> 상호금융특별회계 조달 및 운용	92
<표Ⅳ-6> 대출금리 현황	93
<표Ⅳ-7> 최근 5년간 농신보 수지상황	95
<표Ⅳ-8>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료율	96
<표Ⅳ-9> 최근 2년간 일반보증 대위변제 비율	97
<표Ⅳ-10> 대손보전기금 현황 및 전망	98
<표Ⅳ-11> 2002년 동일인에 대한 금액별 대손보전 현황	100

— 그림 목차 —

<그림Ⅱ-1> 일반·전문 농업경영자금 및 축산경영자금의 대출절차	16
<그림Ⅱ-2> 농신보 신용보증업무 처리절차	32
<그림Ⅱ-3> 신규보증 및 보증잔액의 추이	36
<그림Ⅱ-4>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잔액의 추이	37
<그림Ⅲ-1> 농업정책자금 대출절차	57
<그림Ⅲ-2> 현대화시설자금 대출절차	58

I. 서론

-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세계화, 겸업화, 대형화 추세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도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저금리 추세의 정착에 따라 자금공급의 초과 등 금융시장의 자금흐름에 근본적인 변화가 유발되고 있음.
 - 특히 금융시장에서 자금수요의 감소와 자금공급의 증가에 따라 만성적인 자금수요의 초과현상이 사라지고 금융기관들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노력하게 되었음.

- 이러한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농업정책금융은 자금수요의 초과시대에 만들어진 체제에서 벗어나 금융기관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농업정책금융은 관련법령 및 사업시행지침서 등에 의거하여 농협 및 산림조합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농업정책자금 취급이 농협에 편중되어 농업정책금융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는 주장이 1990년대 하반기 이후 제기되고 있음.
 - 금융시장에서 자금수요가 자금공급을 초과하는 시대에는 농협의 농업정책금융 독점이 불가피한 현상이었음.

-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고 농협은 물론 은행 등 금융기관이 충분한 여유자금을 보유함에 따라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을 확대함으로써 농업정책금융에 경쟁을 촉진하고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업정책금융에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에 대한 금융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출금리 인하로 정부의 재정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또한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자금공급자 위주의 농업 금융체계를 자금수요자 중심의 금융시장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 동안 농업대출의 부실증가에 따라 농신보와 대손보전기금의 기금이 감소하여 농업대출 관련 보증기관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농협이 농신보와 대손보전기금을 관리함에 따라 신용보증 관련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농협이 농업정책자금의 대출, 사후관리, 보증 등 제반업무를 모두 담당함에 따라 보증업무와 관련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취급금융기관이 확대된 이후에는 도덕적 해이에 관한 우려가 보다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정책금융의 독점취급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농업정책금융의 취급금융기관 확대방안(취급금융기관의 선정 및 업무범위), 농업정책자금의 개방방안, 농업정책자금 관리방법 개선방안, 농업정책금융 취급과 관련된 적정 수수료의 결정 및 이차보전방법의 개선방안, 대손보전기금과 농신보의 신용보증기능 강화를 위한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Ⅱ. 우리나라 농업정책금융 현황

1. 농업정책금융 개요

- 농업정책금융은 정부가 농업정책 수행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접 자금을 공급하거나, 농업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의 농업대출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농업부문은 비농업부문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소득의 불확실성이 높으며, 농업생산의 공공재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우리나라 농업금융시장은 농업생산의 고위험, 정보의 비대칭성, 자금수요의 계절성, 농업생산규모의 영세성, 높은 거래비용 등으로 시장실패 위험이 큰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 농업정책금융은 농업금융시장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후생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업정책금융은 특정분야의 육성이나 특정품목의 생산 유도, 소농체제의 신용보완, 영세빈농에 대한 소득보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음.
 - 따라서 농업정책금융은 상업금융과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상업금융과의 과도한 경쟁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선진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농업정책금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첫째, 지원대상이 품목별, 기능별로 과도하게 세분화되고 운용관련 규정이 복잡하여 관리가 어려움.
 - 둘째, 재원이 정부예산, 기금, 금융기관 예수금 등 다양하나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자금의 비중이 매우 높음.
 - 셋째, 행정기관이 지원대상자를 주도적으로 선정하고 있음.
 - 넷째, 농업대출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대손부담을 덜기 위해 농신보, 대손보전기금 등 손실보전장치가 있음.

다섯째, 농업정책금리가 시장금리에 비해 매우 낮음.

여섯째,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이 농업관련 협동조합으로 일원화되어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 농업정책금융의 대부분은 농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통해 최종수요자에게 공급되며 농업협동조합이 대출채권 회수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 농업기반공사는 농지구입자금 등을 관리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안기금을 관리하고 있음.

- 농업정책금융은 농축산경영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농업기계화사업자금, 농안기금, 축산발전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농업정책자금 외에도 농촌주택자금 등 일반정책자금이 농업인을 위해 지원되고 있음.
 - 농업정책금융의 대출용도는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용자금 등이며 사업별로 용도와 대출조건이 정해져 있음.

- 농업정책금융 중에서 농축산경영자금이 약 50%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금융농업중기자금과 농어촌구조개선자금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농업정책금융의 규모는 2001년 이후 감소추세였으나 2004년에는 농업경영자금, 금융농업중기자금, 주택기금 등의 급증으로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음.

<표 II-1>

농업정책자금의 사업별 대출실적

(단위 : 억원)

사업종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농업경영	36,829	36,779	37,159	36,704	32,804	31,649	33,241
축산경영	-	-	5,741	5,983	3,703	3,252	1,759
농어촌구조개선	9,618	9,268	7,836	6,334	7,087	5,895	6,348
축산발전기금	-	-	2,249	1,738	2,156	2,456	3,710
금융농업중기	5,994	22,444	12,993	23,950	14,315	8,276	12,029
농촌환경개선	1,334	2,193	1,048	1,136	974	894	1,300
기타재정자금	4,393	3,252	3,918	3,951	3,834	4,956	4,313
재정농업중기	549	1,092	1,003	161	140	130	200
기타운전(학자금)	335	846	920	721	688	167	200
차관자금	-	249	49	41	-	-	20
실업대책대부사업	2,048	1,699	343	57	-	-	-
특수사업지원	-	47	210	-	74	170	-
상호금융특별장기	-	-	18,413	6,079	1,682	2,238	3,579
일반자금(학자금)	-	-	-	-	1,307	1,645	4,500
주택기금	-	-	-	-	-	6,483	10,000
합 계	61,100	77,869	91,882	86,855	68,764	68,211	81,199
잔 액	127,615 (123,717)	155,991 (150,746)	221,961 (200,748)	303,564 (200,276)	288,883 (190,075)	282,648 (182,842)	

- 주: 1. ()는 상호금융단기농사, 상호금융특별장기, 저리대체자금, 특수사업지원 자금, 실업대책대부사업자금, 주택기금을 제외한 금액
 2. 대출잔액은 대출금원장 잔액 (단, 차관자금, 실업대책대부사업자금, 특수사업지원은 중앙회 대차대조표 잔액)
 3. 축산발전기금대출은 축산자금대리대출금 포함
 4. 2004년은 계획치

자료: 농협중앙회

- 농업정책자금, 일반정책자금 등 농업을 위한 정책자금의 2004년도 지원규모는 8조 1,199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음.
- 농축산경영자금 3조 5,000억원, 농업종합자금 5,789억원,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4,514억원 등이 지원될 계획

<표 II-2>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사업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종류		2004 신규지원계획	2004.2말 잔액	비고
농·어 촌구조 개선자 금	농업기계화	67,660	722,505	농림부
	농업종합자금	115,800	387,886	
	농어민후계자육성	80,000	1,000,974	
	재해대책	60,000	19,541	
	미곡종합처리장	236,160	359,938	
	정주생활권개발	28,000	364,639	
	조합합병지원	4,000	13,300	
	축산폐수처리	24,208	191,524	
	기타	18,986	1,513,547	
소 계		634,814	4,573,854	
축산발 전기금	유통개선	279,704	381,442	농림부
	가축개량및경영개선	0	143,590	
	사육기반확충 및 기타	91,296	1,196,660	
	소 계	371,000	1,721,692	
금융농 업중기 자금	농업기계화	135,500	1,188,563	농림부
	농업종합자금	185,200	481,768	농림부
	RPC운영자금	682,240	361,480	농협자체사업
	재해복구자금	0	220,064	농협자체사업
	농업경영체회생자금	200,000	19,760	농림부
	기타	0	1,805,392	농림부
	소 계	1,202,940	4,077,027	
농·축 산경영 자금	농업경영자금	3,324,100	2,505,051	상호금융, 농협, 재특자금
	축산경영자금	175,900	367,186	
	소 계	3,500,000	2,872,237	

자료: 농협중앙회

- 농업정책금융의 재원은 재정융자특별회계(재특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 차관자금, 각종 기금 차입금, 한국은행 차입금, 금융기관(농협 등) 자금 등이며, 장기시설자금은 주로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조달되고 단기경영자금은 주로 재특회계와 농협 등 금융기관의 예수금에서 조달되고 있음.
- 재특회계자금과 농특회계자금의 비중은 최근에 감소추세이며 농협자금의 비중은 증가추세
- 특히, 2000년 이후 저금리 추세에 따라 정부의 이차보전 부담이 감소하여 농협 회원조합 상호금융자금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

- 농업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에서 농협자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에 중앙회자금 24.7%, 상호금융자금 21.4% 등 농협자금의 비중은 46.1%를 기록함.
- 2004년에 부채대책자금 8,962억원, 농업종합자금 1,852억원, RPC 운영자금 6,822억원 등이 농협자금으로 지원될 계획

<표 II-3> 2004년 정책자금 자원별 지원계획 (억원, %)

사 업 종 류		금 액
운 용	농축산경영자금	35,000
	농어촌구조개선	4,514
	축산발전기금	3,710
	농업종합자금	5,789
	금융농업중기자금	8,822
	농업기계화	2,052
	농촌주택자금	1,300
	대학생학자금	5,500
	주택기금	10,000
	기타 정책자금	4,512
합 계		81,199 (100)
조 달	중앙회 자금	19,708 (24.7)
	상호금융자금	17,045 (21.4)
	재특회계자금	22,172 (27.8)
	농특회계자금	6,478 (6.3)
	각종기금차입	15,796 (19.8)

자료: 농협중앙회

- 농업정책금융의 연체채권은 2004년 2월말 현재 1조 6,578억원으로 총 대출잔액 27조 4,898억원의 6.03%를 기록하여 국내 은행의 연체 비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연체채권 중 1년 이상 연체는 42.4%, 6개월 이상 연체는 60.7%를 점유하여 6개월 이상 장기연체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
- * 2003년말 시중은행의 무수익여신비율은 2.2%

- 특히, 농축산경영자금의 연체비율이 9.42%이며, 이 중에서 1년 이상 장기연체비중은 53.7%로서 매우 심각한 수준

<표 II-4> 기간별 연체채권 및 연체비율(2004. 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자 금	총대출잔액	연체채권 및 연체비율					
		계	1월미만	3월미만	6월미만	1년미만	1년이상
농축산 경영자금	28,722	2,705	40	755	177	280	1,453
		9.42	1.5	27.9	6.5	10.4	53.7
증장기자금 등	246,176	13,873	773	2,704	2,064	2,749	5,583
		5.64	5.6	19.5	14.9	19.8	40.2
계	274,898	16,578	813	3,459	2,241	3,029	7,036
		6.03	4.9	20.9	13.5	18.3	42.4

주: 총대출잔액은 주택기금 제외

자료: 농협중앙회

- 2001년 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으로 연체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농가경영여건의 지속적인 악화로 농업정책자금의 연체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2004년 2월말에 6.03%에 달하였음.

<표 II-5> 연체비율 추세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2말
3.8%	3.2%	3.59%	3.10%	3.79%	5.74%	6.03%

자료: 농협중앙회

- 증장기정책자금 상환연기 등 2001년 및 2004년의 농가부채대책 시행으로 농업인의 대출금 상환부담이 경감되어 향후 단기적으로 연체비율의 감소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연체비율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음.

- 농어촌구조개선자금 등 중장기자금의 장기분할상환으로 농업인의 상환부담이 연기되어 당분간 연체비율의 급격한 상승은 우려되지 않으나 농업소득 증가 등 기본여건의 개선이 없는 한 향후 연체비율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표 II-6> 2001년 부채대책 추진실적(2004. 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자금종류		추진계획	대상자확정 (A)	대출실적 (B)	추진비율 (B/A)	지원조건
중장기	대환	36,113	24,080	11,307	47.0	2년거치 5년분할상환
	우대	-	19,630	19,630	-	
조기상환우대		-	6,303	6,303	-	
연대보증피해		5,000	5,351	4,888	91.3	3년거치 7년분할상환
상호금융저리대체		96,000	81,338	80,537	99.0	5년후일시
연체이자감면		-	1,657	1,371	82.7	
연대보증해소		-	3,880	3,406	87.8	
농업경영개선		28,000	27,890	24,992	89.6	3년거치 7년분할상환
합 계		165,113	170,129	152,434	89.6	

- 주: 1. 중장기정책자금의 대출실적비율은 2001~2003년 도래기준
 2. 상호금융저리대체 및 농업경영개선의 금리는 6.5%, 중장기대환 및 연대보증피해의 금리는 3.0%, 중장기우대는 할부원금에 대한 이자액 20% 감면 등의 이자감면

자료: 농협중앙회

<표 II-7>

2004년 농가부채 경감 특별대책

자 금 종 류		지원금액	금리인하	상환조건 개선
중장기	대환		1.5%	5년 거치 15년 상환
	우대			이자 40% 감면
연대보증피해			3.0%	3년 거치 17년 상환
상호금융대체		7조원	3.0%	5년후 일시상환
농업경영개선			3.0%	2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7년 상환
조기상환우대				이자 40% 감면
농업경영체회생		2,000억원	3.0%	3년 거치 7년 상환

자료: 농림부

- 1990년대 초반까지 농협중앙회의 대출금 중에서 농업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였으나 2000년 이후 일반대출의 높은 증가로 인하여 농업정책대출이 농협중앙회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 대출금 중 정책자금 대출비중(잔액기준)은 1991년 67.2%에서 2004년 6월말 25.6%로 급격히 감소

- 농협중앙회의 농업정책대출 잔액은 1991년 6조 1,887억원에서 2000년 19조 9,972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04년에는 17조 3,309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991년 9조 2,122억원에서 2000년 44조 3,088억원, 2004년 6월말 67조 7,183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음.

<표 II-8> 농협중앙회 대출금 중 정책자금 비중

(단위: 억원, %)

	1991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대출잔액(A)	92,122	162,053	443,088	487,482	544,167	633,520	677,183
정책자금 대출잔액(B)	61,887	92,305	199,972	196,520	177,547	175,315	173,309
비중(B/A)	67.2	57.0	45.1	40.3	32.6	27.7	25.6

주: 2003년까지는 연말 기준, 2004년은 6월말 기준

자료: 농협중앙회

- 농협을 통한 농업정책대출은 중앙회 직접대출과 회원조합대출로 구분되나 주로 회원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중앙회 직접대출 비중은 약 25%, 회원조합 비중은 약 75%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농협중앙회의 직접대출 비중은 2000년 12월말 23.4%에서 2004년 6월말 26.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II-9> 정책자금대출의 실행 경로

(단위: 억원, %)

	2000			2002			2004		
	직대	조합 대출	계	직대	조합 대출	계	직대	조합 대출	계
금액	49,756	153,216	199,972	45,647	131,900	177,547	42,445	130,864	177,339
구성비	23.4	76.6		25.7	74.3		26.2	73.8	

주: 2000년 및 2002년은 연말 잔액기준, 2004년은 6월말 잔액기준

자료: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예수금의 농업정책자금 투입비중은 1991년 13.6%, 1995년 15.9% 등 1990년대에는 10%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예수금의 정책자금 운용규모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금의 급격한 증가로 투입비중은 감소하여 2004년 6월말 정책자금 운용잔액은 5조 9,276억원으로 예수금 74조 586억원의 8.0%를 기록

<표 II-10> 농협중앙회 예수금의 정책자금투입 비중

(단위: 억원, %)

구 분	1991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예수금(A)	114,335	187,378	490,572	580,180	646,042	706,903	740,586
정책자금 운용(B)	15,551	29,726	37,396	59,230	59,480	57,810	59,276
비중(B/A)	13.6	15.9	7.6	10.2	9.2	8.2	8.0

주: 2003년까지는 년말 잔액기준, 2004년은 6월말 잔액기준

자료: 농협중앙회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농업인의 재정 및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농업 정책자금의 신용보증 이용이 증가하여 농업정책자금의 신용보증 비율은 1996년 12.7%에서 2002년 32.6%로 급증하였음.
 - 2004년 6월말 현재 농업정책자금의 신용보증 비율은 29.3%로서 2002년말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음.

<표 II-11> 농업정책자금의 신용보증 비율

(단위: 억원, %)

구분	1996	1998	2000	2002	2004
정책자금 잔액(A)	97,849	127,615	199,972	177,547	177,339
신용보증 잔액(B)	12,457	25,261	51,975	57,917	52,006
비중(B/A)	12.7	19.8	30.0	32.6	29.3

주: 2003년까지는 년말 기준, 2004년은 6월말 기준

자료: 농협중앙회

- 농협의 농업정책자금 및 일반정책자금 취급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율은 0.5%~2.0%로 자금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농업정책자금 수수료율은 국민투자기금 및 재정수리자금 0.5%, 농지구입자금 0.8%, 농특자금, 축산발전기금 및 금융농업중기자금 1.0%, 차관자금 1.16%, 재정농축산경영자금 1.23%
 - 일반정책자금 수수료율은 노인복지시설자금 0.5%, 재활용산업육성자금 0.9%, 영세민생업자금 등 1.0%,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등 1.5%, 농촌주택자금 2.0%

- 농협의 정책자금 취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2000년 이후 2,1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2,135억원으로 평균수수료율은 1.14%를 기록함.

<표 II-12> **평균수수료율 및 수수료 추이**

(단위 : 억원)

연 도	농 협			축 협			수수료 합 계
	평균잔액	평 균 수수료율	수수료	평균잔액	평 균 수수료율	수수료	
1998	102,196	0.90%	924	40,823	0.89%	363	1,287
1999	107,857	1.02%	1,096	39,628	0.91%	361	1,457
2000	207,254	1.03%	2,145	-	-	-	2,145
2001	204,191	1.07%	2,192	-	-	-	2,192
2002	198,234	1.09%	2,162	-	-	-	2,162
2003	186,525	1.14%	2,135	-	-	-	2,135

주: 1. 자체자금은 대출평잔의 1%를 취급수수료로 간주하여 수수료율 계산

2. 축협은 자체자금을 제외한 수수료

자료: 농협중앙회

2. 주요 농업정책자금별 현황

- 농업정책자금은 재원별 또는 용도별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농업기계화사업자금, 농안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재원별로 구분할 경우에는 정부회계자금, 기금, 금융기관 조달자금, 외국자금, 기타 등으로 구분됨.
 - 정부회계자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등으로 구분
 - 기금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등으로 구분
 - 금융기관 조달자금은 중앙회자금, 회원조합자금, 부채대책자금 등으로 구분

<표 II-13>

농업정책자금 대출잔액
(2003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재 원		금 액				합계
		농협	수협	산림조합	기타	
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7,520	7,723	5,436	-	60,679
	채정투융자특별회계	35,476			-	35,476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	-	-	-	-
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17,830	2,617	351	7,374	28,172
	농지관리기금	1,353	-	-	21,827	23,180
	축산발전기금	17,707	-	-	-	17,707
금융기관 조달자금	중앙회자금	55,384		17	-	55,401
	회원조합자금	1,402		-	-	1,402
	부채대책자금	90,545	-	1,287	-	91,832
외국자금	차관자금	737	-	-	-	737
기타		24,253		-	-	24,253
합계		292,207	10,340	7,091	29,201	338,839

가. 농축산경영자금

- 농축산경영자금은 농업경영의 원활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를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임.
 - 농축산경영자금의 지원사업은 일반농업경영자금, 전문농업경영자금, 일반축산경영자금 및 재해대책자금

- 농축산경영자금의 재원은 재특자금, 한은자금, 농협중앙회자금 및 상호금융자금으로 구성됨.
 - 정부예산인 재특자금과 농협자금이 각각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은자금은 1998년 이후 투입되지 않고 있음.

<표 II-14>

농축산경영자금의 재원구성

(단위 : 억원, %)

년도	채특자금	한은자금	중앙회자금	상호금융	계
1997	13,850 (42.0)	1,700 (5.2)	15,650 (47.4)	1,800 (5.4)	33,000 (100.0)
1998	16,590 (43.7)	- (-)	19,610 (51.6)	1,800 (4.7)	38,000 (100.0)
1999	16,590 (43.7)	- (-)	19,610 (51.6)	1,800 (4.7)	38,000 (100.0)
2000	16,590 (43.7)	- (-)	19,610 (51.6)	1,800 (4.7)	38,000 (100.0)
2001	16,590 (43.7)	- (-)	19,610 (51.6)	1,800 (4.7)	38,000 (100.0)
2002	19,685 (51.4)	- (-)	16,825 (43.9)	1,800 (4.7)	38,310 (100.0)
2003	19,485 (51.8)	- (-)	16,315 (43.4)	1,800 (4.8)	37,600 (100)
2004	18,685 (53.4)	- (-)	- (-)	16,315 (46.6)	35,000 (100)

주: ()는 구성비율

자료: 농협중앙회

- 농축산경영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3.0%,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며 대출한도는 자금별로 차이가 있음.
 - 일반 및 전문농업경영자금의 대출한도는 농가당 1,500만원,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은 3,000만원
 - 일반축산경영자금의 대출한도는 1,000만원, 기타자금은 별도의 지원계획에 의해 대출한도가 정해짐.

<표 II-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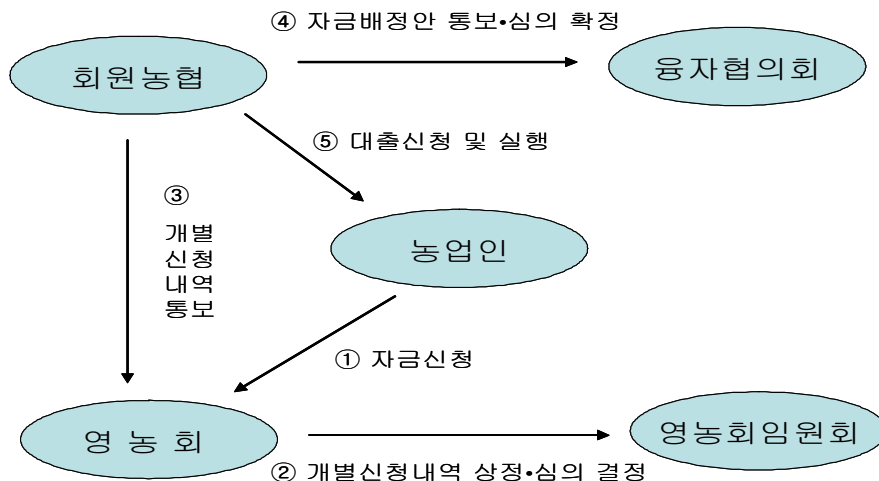
농축산경영자금 대출조건

자금종류	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
일반농업경영자금, 전문농업경영자금, 원예작물자금	연 3%	1년 이내	자금연도별로 1,500만원 이내 (법인 및 단체는 3,000만원 이내)
원예작물자금 중 신규인삼식재자금	연 3%	1년 이내	자금연도별로 450만원이내
축산경영자금	연 3%	1년 이내	대출잔액기준 1,000만원 이내
재해대책경영자금	연 3%	1년 이내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단,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는 농가당 100만원이상 5,000만원 이내(법인은 1억원 이내)

자료: 농협중앙회

- 일반 및 전문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의 대출절차는 <그림 II-1>과 같이 농업인이 영농회에 자금을 신청하고, 영농회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농협이 대출을 시행하며, 재해대책지원자금의 대출은 정부의 지원계획에 의함.

<그림 II-1> 일반·전문 농업경영자금 및 축산경영자금의 대출절차



나. 농어촌구조개선자금

-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함.
-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의 지원대상은 매년 농림부에서 제정하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심사기준을 통과하여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등에 의해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임.
-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의 대출금액은 사업계획서의 투자금액에서 농업인의 자기부담과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임.
 -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0%~6.5% (통상 4.0% 수준), 대출기간은 1년~20년 (통상 10년 수준)

<표 II-16>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대출조건

(단위: %, 년)

사업명	용도명	대출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대출한도		
					보조	융자	자기부담
지역특화시범사업	시설비	5.0	3	7	40	40	20
채소생산유통지원	고품질우량	4.0	3	7	-	70	30
농업인후계자육성	취농창업후계농업인	4.0	5	10	1인당 20~100백만원		
농공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5.0	5	10	사업별 한도		
재해복구비	수리시설개보수	4.0	5	10	사업별 한도		
	원예특작분야	4.0	5	10	사업별 한도		
	축산분야	4.0	5	10	사업별 한도		
	인삼분야	4.0	연근별로 3-5년		사업별 한도		
농어촌정주권개발	문화마을조성	4.0	2	2	사업지구당예산확보액이내		
	주택신축기타	5.5	5	15	호당 20백만원 이내		
	주택개량	4.0	3	7	호당 5백만원 이내		
	주택신축문화마을	5.0	5	15	호당 20백만원 이내		
조합합병지원	경영활성화	0.0	5	일시	소멸조합당 1억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생산자단체	5.0	3	7	50	30	20
	시설-민간업체	5.0	3	7	-	80	20
	운영자금	4.0	1년 이내		개소당 18억원 이내		
주거환경개선	시설비	4.0	3	7	농가당 490만원 이내		
축산분뇨처리시설	시설비	4.0	3	7	30	70	-

자료: 농협중앙회

-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의 재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용자계정으로 연도별 지원액은 1997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다. 농업기계화사업자금

- 농업기계화사업자금은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구조개선 및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함.
- 농업기계화사업자금은 농기계구입자금, 농기계를수리봉사지원자금, 농기계보관창고지원자금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 지역농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시·군 행정기관 등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농업기계화사업자금의 지원비율은 대체로 사업비의 70%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3.0%~5.0% 수준임.

<표 II-17> 농업기계화자금 대출조건

구 분	지 원 기 준	대 출 한 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농기계 구입자금	기종별로 농기계구입 가격의 약 70%(평균)이내	기종별 지원한도 이내	1년거치 4-7년	3.0%
수리용부품 확보자금 등	사업비의 70% 이내	대출실행후 잔액이 3,000만원~2십억원	1년거치 4년상환	4.0%
농기계보관 창고자금	사업비의 70% 이내	중앙본부 대출한도배정 금액 이내	3년거치 7년상환	5.0%

자료: 농협중앙회

- 농업기계화사업자금 지원은 2001년 이후 농업인의 농기계에 대한 수요 감소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표 II-18>

농업기계화자금 지원실적

(단위: 억원)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지 원 액	3,378	3,560	5,855	6,977	6,970	8,354	5,302	4,121	2,851
지원 잔액	20,035	18,825	20,120	22,188	24,035	26,983	25,655	23,025	19,528

자료: 농협중앙회

- 농업기계화사업자금의 재원은 2004년의 경우, 농협자금 66.0%, 농특회계자금 33.0%로 구성됨.

<표 II-19>

농업기계화자금 재원구성
(2004년)

(단위 : 억원)

자금조달원	농특회계자금	농협자금	차관자금	계
금 액	677	1,355	20	2,052
(구성비)	(33.0)	(66.0)	(1.0)	(100.0)

자료: 농협중앙회

라. 농안기금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 유통시설의 근대화 촉진, 농업관련업체의 경영활성화 지원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지원대상자는 농산물가공업체, 농산물유통센터 등임.
- 농안기금의 대출금리는 3.0%~5.5%, 대출기간은 1년~3년이며, 지원액은 농수산물의 수급상황에 따라 년도별로 변화가 심함.

<표 II-20>

농안기금 지원액 및 잔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지원액	478	691	994	1,079	773	838	854	1,220	675	911	1,252	1,286
잔액	611	795	1,038	1,745	1,544	1,721	1,823	1,599	1,310	1,149	1,886	

주: 2004년은 계획금액

자료: 농협중앙회

마. 축산발전기금

-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 축산발전기금은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주관하고 지원대상은 축산농가, 축산관련업체, 회원축협 등임.
- 축산발전기금의 지원액은 1998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02년 이후 증가추세이며, 2004년에는 3,710억원의 지원이 계획되고 있음.

<표 II-21>

축산발전기금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억원)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지원액	4,910	5,267	5,647	3,538	2,274	2,392	1,740	2,500	2,462	3,710
지원잔액	14,538	19,283	22,616	23,278	22,271	21,328	18,531	17,760	17,743	

주: 1. 지원실적은 대출원장기준이며, 축산자금대리대출금 잔액 포함

2. 2004년은 계획 금액

자료: 농협중앙회

- 축산발전기금의 대출금리와 대출기간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적용금리는 연 4%,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7년 원금균등상환이며, 사업자가 사업비의 20%~30%를 자기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표 II-22>

축산발전기금 대출조건

사업명	용도명	융자조건			대출한도
		금리(%)	거치	상환	
가축계열화	계열화사육비	5.5	2년 일시상환		사업별 한도
	시설자금	4.0(5.0)	3	7	융자70%,자담30%
닭고기부분육시설및 계란집하장설치지원	시설자금	5.0	3	7	융자70%,자담30%
	운전자금	5.0	1년 일시상환		개소당 9억원
경주마육성	시설자금	4.0	3	7	융자70%,자담30%
낙농관련시설	시유전문가공시설	5.0	3	7	융자70%,자담30%
	유제품개발생산시설	5.0	3	7	융자70%,자담30%
도축도계시설	도축장시설현대화	4.0	3	7	융자70%,자담30%
	운영자금	5.0	1년 일시상환		사업별 한도
	도축장시설보완	4.0	3	7	융자70%,자담30%
브랜드육 육성	브랜드육가맹점	5.0	3	5	융자70%,자담30%
	한우고기유통브랜드 경영체육성	4.0	1년 일시상환		개소당 10억원
사료원료구매자금	사료원료구매	5.5	1년 일시상환		사업별 한도
사료제조시설	섬유질사료제조시설	5.0	3	7	융자70%,자담30%
가축방역관련 경영안정자금	가축질병관련지원	3.0	2년 일시		사업별 한도
오리도축가공시설	시설자금	4.0	3	7	융자70%,자담30%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시설자금	4.0	3	7	사업별 한도
축산물종합처리장 ·오 리도축장· 도매시장· 공판장운영활성화	운영자금	4.0(5.5)	1년 일시상환		사업별 한도
수출및육가공업체 시설지원	운전자금	4.0	1년 일시상환		사업별 한도
	수출및육가공업체 시설자금	4.0	3	7	융자70%,자담30%
축산물판매업소 지원	식육소매유통시설	5.0(5.5)	3	5	융자70%,자담30%
	닭고기체인점설치지원	5.0	3	5	융자70%,자담30%
한우특화사업	송아지생산기지화	4.0	3	7	보조20, 융자40, 지방비30,자담10%
산지축산물 생산유통 지원	브랜드사업부문	3.0	3년 일시상환		융자80%,자담20%
	축협경제활성화부문	3.0	3년 일시상환		융자80%,자담20%
축산업등록지원사업	시설자금	3.0	3	7	융자80%,자담20%

자료: 농협중앙회

3. 농업종합자금

- 농업종합자금은 대출금융기관이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대상자 선정 등을 책임지는 시장원리에 의한 대출제도로써 1990년대 42조원 농업투융자사업의 성과가 기대수준에 미흡하여 1999년에 도입되었음.
 - 농업종합자금의 대상자 선정 및 사업타당성 검토 책임은 행정기관에서 농협으로 이관
 - 지원자금을 개별사업자금에서 농업종합자금으로 점진적으로 이전하여 2004년 현재 24개 자금이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되었음.

- 농업종합자금은 지원방식을 농업경영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심사기능을 보다 강화하며, 세부사업별로 복잡하게 지원되던 자금을 통합하여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단순화하면서 자금대출 후 농가경영진단을 통한 적극적인 사후관리에 의해 사업성공률을 제고하고 부실을 최소화시키고자 함.
 - 또한 자금의 지원시기를 년 1회에서 연중 수시로 변경하여 수요자 중심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표 II-23> 농업종합자금제도의 주요내용

구 분	기존 정책대출제도	농업종합자금제도
대출방식	개별사업 중심 대출	개별경영체 중심 대출
대출재원	정부예산	정부예산 및 농협예산
대상자선정	시장, 군수	농협이 대출심사를 통해 선정
대출시기	연1회 신청 대출소요기간: 1~1.5년	연중 수시신청, 수시대출
대출내용	1회성 시설자금 위주 대출 채권관리: 농협 사업관리: 행정기관	시설 및 운전자금 연계대출 채권 및 사업 관리: 농협

주: 현재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이 유보된 자금은 소농자금(농축산경영자금), 소액농기계자금, 공공투자자금 등

자료: 농협중앙회

<표 II-27> 농업정책자금의 자금별 대출실적 및 비중

(단위 : %, 억원)

자금종류	1999	2000	2001	2002	2003
일반농업경영자금	20,500 (26.3)	20,000 (21.8)	22,922 (26.3)	22,735 (33.1)	19,539 (31.7)
농업종합자금	145 (0.0)	1,605 (1.7)	2,422 (2.8)	6,243 (9.1)	4,523 (7.3)
농업기계화자금	6,986 (9.0)	7,801 (8.5)	4,726 (5.4)	4,090 (5.9)	2,956 (4.8)
후계농업인육성자금	2,055 (2.6)	901 (1.0)	719 (0.8)	640 (0.9)	551 (0.9)
기타	48,327 (62.1)	61,575 (67.0)	56,276 (64.6)	35,055 (51.0)	34,159 (55.3)
합 계	77,868	91,882	87,065	68,763	61,728

주: ()는 농업정책자금 대비 비중

자료: 농협중앙회

- 농업종합자금의 용도별 대출실적을 분석하면 2000년까지는 시설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1년 이후에는 운전자금의 대출비중이 증가하여 2003년의 운전자금은 2,673억원으로 전체 4,523억원의 59%를 점유하고 있음.

<표 II-28> 농업종합자금의 용도별 대출실적

(단위 : 억원)

	1999	2000	2001	2002	2003
시 설	114	1,333	666	931	723
개보수	7	152	211	530	1,127
운 전	24	120	1,545	4,782	2,673
계	145	1,605	2,422	6,243	4,523

자료: 농협중앙회

- 농업종합자금의 대출규모별 건수 및 대출금액을 살펴보면, 1억원 이상의 비중은 매우 낮고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비중이 제일 커서 2003년에는 7,860건, 2,714억원으로 건수로는 49%, 금액으로는 60%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29> 농업종합자금 대출규모별 건수 및 지원금액

(단위 : 건, 억원)

연도별실적		1999	2000	2001	2002	2003
건수	2천만원미만	48	4,330	2,666	5,672	6,760
	2천만원~5천만원미만	270	2,981	6,143	16,713	7,860
	5천만원~1억원미만	55	360	579	1,411	1,030
	1억원 이상	14	120	87	560	370
금액	2천만원미만	4	233	198	550	643
	2천만원~5천만원미만	79	794	1,576	4,239	2,714
	5천만원~1억원미만	41	288	457	906	671
	1억원 이상	22	290	192	728	495

자료: 농협중앙회

- 전반적으로 농업정책자금의 연체율은 높은 수준이지만 2003년 농업종합자금의 연체율은 1.15%로 농어촌구조개선자금 6.20%, 일반농업경영자금 5.10%, 전문농업경영자금 9.79%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II-30> 농업정책자금 종류별 연체비율

(단위 : 억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농어촌 구조개선	대출잔액(A)	49,401	62,244	57,768	52,761	46,480
	연체잔액(B)	1,383	2,156	1,879	2,394	2,883
	연체율(B/A)	2.80	3.46	3.25	4.54	6.20
일반 농업경영	대출잔액(A)	6,035	6,661	13,974	9,616	15,975
	연체잔액(B)	444	370	363	878	815
	연체율(B/A)	7.35	5.55	2.60	9.13	5.10
전문농업 경영자금	대출잔액(A)	9,508	10,398	9,495	9,638	9,938
	연체잔액(B)	624	734	664	754	973
	연체율(B/A)	6.56	7.06	6.99	7.83	9.79
농업 종합자금	대출잔액(A)	145	1,750	3,826	9,132	12,221
	연체잔액(B)	0	0	1	39	141
	연체율(B/A)	0	0	0	0	1.15

자료: 농협중앙회

4. 이차보전제도

- 이차보전은 농업정책자금 취급금융기관이 자체 조달한 자금을 정부의 농업정책사업 수행을 위해 농업인에게 저리 대출함에 따른 손실(이자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임.
 - 농업정책대출이 정부의 재정자금이나 각종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 농협 등 취급금융기관들은 약 1.0%의 취급수수료를 지급받으나 취급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업정책금리와 금융기관 대출금리 간의 이차차액을 보전받음.

-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각종 농가부채경감대책 및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등에 근거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해 이차보전이 시행되고 있음.

- 이차보전 대상자금은 농업정책자금 중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기계구입자금, 재해복구자금, 재해연기, RPC 운영자금, 귀농자창업자금, 농업경영체회생자금 등이며, 농가부채대책자금 중 2001 농가부채대환자금, 농업경영개선자금, 연대보증해소자금, 상호금융 대체자금, 정상상환농가인센티브 등임.

- 농림사업정책자금 중에서 이차보전이 되는 자금은 상호금융자금을 사용하는 자금과 농협중앙회 자금을 사용하는 자금으로 구분함.
 - 농협중앙회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이차보전금액을 정부로부터 수령하여 중앙회 및 회원조합에 배분

- 정부가 금융기관에게 이차를 보전하는 금액은 대출금융기관의 농업정책금융 평잔에 이차보전율을 곱하여 계산함.
 - 이차보전율은 기준금리에서 농업정책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차이
 - 기준금리는 금융기관 자체자금 또는 조합 상호금융자금의 경우에는 이차보전 대상기간 중의 전체 대출잔액 가중평균금리임.
 - 농업정책대출금리는 실제로 농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로서 대출자 금별로 정부가 정한 정책금리임.

- 기준금리는 전체 조합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조합별로 자금운용금리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호금융자금을 농업정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합별로 이차보전액을 정산하고 있음.
 - 기준금리 이하로 자금을 운용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해당조합 운용금리에 의해 이차보전액을 산출
 - 기준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로 자금을 운용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기준금리에 의한 이차보전액과 기준금리 이하 운용조합의 운용금리와 기준금리와의 이차 상당액을 안분한 금액을 합하여 이차보전액을 산출

- 회원조합 상호금융자금과 중앙회자금의 기준금리는 다르게 책정되고 있으며, 회원조합 대출금리가 중앙회 대출금리보다 높아 회원조합 자문에 대한 기준금리는 중앙회자문에 대한 기준금리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음.

- 2000년 이후 저금리 추세에 따라 기준금리는 하락하고 있으며, 정부가 보상하는 이차보전액도 2000년 5,717억원에서 2003년 3,334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음.
 - 하지만, 회원조합의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중앙회 대출금리에 비해 감소폭이 작아 기준금리간의 금리차이는 2000년 0.57%에서 2003년 1.67%로 상승하고 있음.

<표 II-31> 이차보전 기준금리 및 이차보전액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기준금리	조 합 (A)	11.70	10.80	8.82	7.88
	중앙회 (B)	11.13	9.39	7.41	6.21
	금리차 (A-B)	0.57	1.41	1.41	1.67
이차보전액		5,717	6,109	4,798	3,334

자료: 농협중앙회

- 이차보전제도는 정부가 이차차액 만을 보전하므로 단기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정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부가 보전한 이차차액은 추후 상환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부담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음.
- 정부의 농가부채대책 시행으로 상호금융자금의 투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차보전 대상 상호금융자금의 규모는 2003년말에 9조 1,003 억원을 기록함.
 - 농가부채대책인 상호금융대체지원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에 8조 6,241억원, 농업종합자금에 3,390억원, 농축산경영자금에 1,402억 원이 투입됨.
- 농업종합자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2002년 6월부터 농협중앙회 기준금리에 의해 이차를 보전하는 상호금융자금의 투입을 허용하여 2003년말 현재 3,390억원이 투입됨.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개요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나 신용도가 낮은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농어촌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2년에 설립함.
 - 1971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을 제정하고, 1972년 농협중앙회 및 정부의 기금출연으로 농신보의 업무개시
- 농신보는 2003년말까지 58조원의 신용보증과 13조원의 특례보증을 제공하여 농어업인의 연대보증부담 해소 및 정부의 부채경감정책을 지원하고 2004년에는 3조원의 지원이 예상됨.

○ 농어가부채대책 등과 관련된 특례보증잔액은 2003년말 현재 11조원으로 농신보 총 보증잔액 19조원의 53%를 점유

□ 그 동안 시행된 특례보증으로는 사채보유농어가 신용보증(1987), 농어가부채경감특별조치에 관한 신용보증(1990), 농어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 신용보증(1998), 농어업인 연대보증 부담경감 신용보증(1999), 농어업인 연대보증 해제 신용보증(1999), 농어가부채경감대책 신용보증(2000),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 신용보증(2001), 기타 부채대책관련 신용보증(2003) 등이 있음.

□ 농신보의 기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 금융기관, 농림수산단체 등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에 의해 조성되고 있으나, 주로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음.

○ 정부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거해 2003년까지 농특회계 1조 5,337억원, 재특회계 997억원 등 모두 1조 6,334억원의 기금을 출연

○ 1994년 '농어촌구조개선대책'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투융자계획에 따라 1994년 이후 2004년까지 7,000억원을 지원

<표 II-32> 농어촌특별회계 예산출연 현황

(단위: 억원)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200	800	700	700	590	760	4,260	3,765	2,562	1,000	15,337

주: 재특회계 정부예산 출연금(1972~1994)은 997억원

자료: 농협중앙회

□ 농신보의 기금관리는 농협중앙회, 관리감독은 재정경제부, 정부출연에 의한 세출예산은 농림부, 기금운용계획은 기획예산처 등 업무별로 담당기관이 구분되어 있음.

- 농신보의 내부기관으로는 이사장(농협 중앙회장 겸임), 부이사장(농협 신용대표이사 겸임), 신용보증심의회 등이 있음.
- 신용보증심의회는 농신보의 신용보증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신용보증심의회는 당연직인 재정경제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직원 8명과 농업계, 수산업계, 축산업계 및 임업계의 대표 4명 등 12명으로 구성
- 농신보의 관리기관은 중앙본부와 9개 지역보증센터 및 20개 권역보증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역 및 신용보증금액 등에 의해 업무를 분담하고 있음.
 - 보증센터는 2001년 4월 이후 설립
- 현재 농협, 수협, 산림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농신보의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은행도 농신보 관련법에 농신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규정되어 농신보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 농신보의 신용보증을 사용할 수 있음.
- 지역 및 권역 보증센터는 7억원 이하의 신용조사 및 보증서 발급과 10억원 이하의 대손판정 업무를 담당하고, 중앙본부는 7억원 초과 의 신용조사 및 보증서 발급과 10억원 초과 의 대손판정 업무를 담당하며, 구상권 관리업무는 지역별로 할당함.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중앙회 및 회원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은 농신보의 업무위탁에 의해 일반보증 5천만원이하, 특례보증 1억원 이하의 보증서를 발급

<표 II-33>

사무소별 취급업무

구 분	관 리 기 관			금융기관
	중앙본부	지역센터	권역센터	
신용조사 및 보증서발급	7억원 초과	7억원 이하	7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 특례보증 1억원이하
대손 판정	10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
구상권 관리	서울관내분	관할구역분	관할구역분	일부대위변제채권
기 타	신용보증 사후관리			대출실행 보증료징수 대손판정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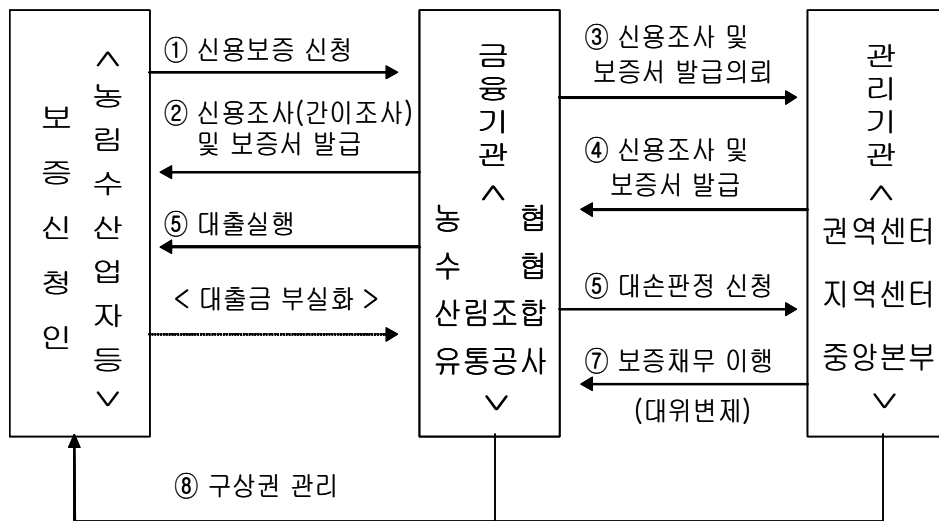
주: 금융기관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 농협중앙회

나. 신용보증업무

- 농신보의 보증업무 처리절차는 <그림 II-2>와 같이 농업인 등이 금융기관에 신용보증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농신보 관리기관에 신용조사 및 보증서 발급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농신보 관리기관은 금융기관에게 보증서를 발급함.

<그림 II-2>

농신보 신용보증업무 처리절차



- 농신보의 보증대상자금은 농림수산업자 등의 농림수산사업과 관련된 대출금 및 상거래 채무 등이며, 구체적인 보증대상자금은 다음과 같음.
 - 보증대상자의 영농·영어·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
 -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에 필요한 자금
 - 보증대상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
 - * 시설자금, 운전자금, 정책자금, 비정책자금 등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상거래관련 금전채무

- 농신보는 대출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3년부터 일부 자금에 대해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점진적으로 보증대상자금을 확대하고 있음.
 - 2003년에 비농업인의 정책자금 및 농업종합자금, 2004년에 농업인의 정책자금 중 직접보증분에 대한 부분보증제도가 시행되고, 2005년부터 농업인의 정책자금 중 위탁보증분에 대한 부분보증제도를 시행할 계획
 - 부분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부실발생시 대출금융기관은 대출손실의 10%를 부담하고, 농신보는 90%를 보상

<표 II-34> 부분보증 적용대상자금 추이

적용시기	부분보증 대상자금
2002.12.23	- 비농업인의 일반자금 - 농어업인의 일반자금중 직접보증분
2003.1.2	- 비농어업인의 정책자금 - 농어업인의 일반자금중 위탁보증분
2003.2.3	- 농업인의 정책자금중 금융기관이 대상자를 결정하는 농업종합자금
2004	- 농어업인의 정책자금중 직접보증분
2005	- 농어업인의 정책자금중 위탁보증분

자료: 농림부

- 소액대출 등에 대해서는 농신보의 부분보증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잔액기준으로 자연인인 농업인의 3,000만원 이하의 소액자금, 재해대책자금, 부채대책자금 대환자금 및 기한연장자금에 대해서는 부분보증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 * 부채대책자금 대환자금 및 기한연장자금에 대해서는 당초 보증비율을 유지
- 농신보의 보증한도는 기금의 20배로 제한되며, 1인당 보증한도는 보증대상자에 따라 10억원~30억원으로 제한함.

<표 II-35> 보증대상자 및 1인당 한도

보 증 대 상 자	1인당 보증한도	
농어업인, 양축인, 산림경영자, 축산계, 비법인 어촌계,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 미곡종합처리장사업자(비법인), 인삼경작자, 원양어업자 등	10억원	
농림수산단체, 농림수산물생산법인 및 유통가공단체, 어촌계(법인), 전문농협, 미곡종합처리장사업자(법인), 농수산물수출중소기업, 농수산기자재제조중소기업 등	일반	15억원
	특별	30억원

주: 특별한도는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단체(법인 포함)자금에 대해 심의회가 인정시 지원가능

자료: 농협중앙회

- 보증료율은 원칙적으로 보증대상 및 보증금액에 따라 정해진 기준 보증료율을 적용하며, 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도에 따라 0.2%p를 가감하여 보증료율을 결정함.

<표 II-36>

기준 보증료율

구 분		농림어업 (1차산업)	비농림어업 (2·3차산업)
자연인 및 비법인 단체	보증금액 1억원 이하	0.3%	0.4%
	보증금액 1억원 초과	0.4%	0.6%
	보증금액 5억원 초과	0.6%	0.9%
법 인	보증금액 1억원 이하	0.5%	0.8%
	보증금액 1억원 초과	0.7%	1.0%
	보증금액 5억원 초과	1.0%	1.2%

주: 동일인 보증누계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보증인이 기준 보증료율에 0.2%p를 추가부담하면 연대보증인 입보 생략 가능

자료: 농협중앙회

□ 보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심사, 보증서발급, 사후 관리업무 등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위탁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나, 위탁보증의 경우에 대손율이 높아 도덕적 해이 문제와 이로 인한 기금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2003년에 대손판정한 6,655억원 중 위탁보증이 6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탁보증 중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가 1,442억원으로 21.7%를 점유

<표 II-37>

대손판정 현황
(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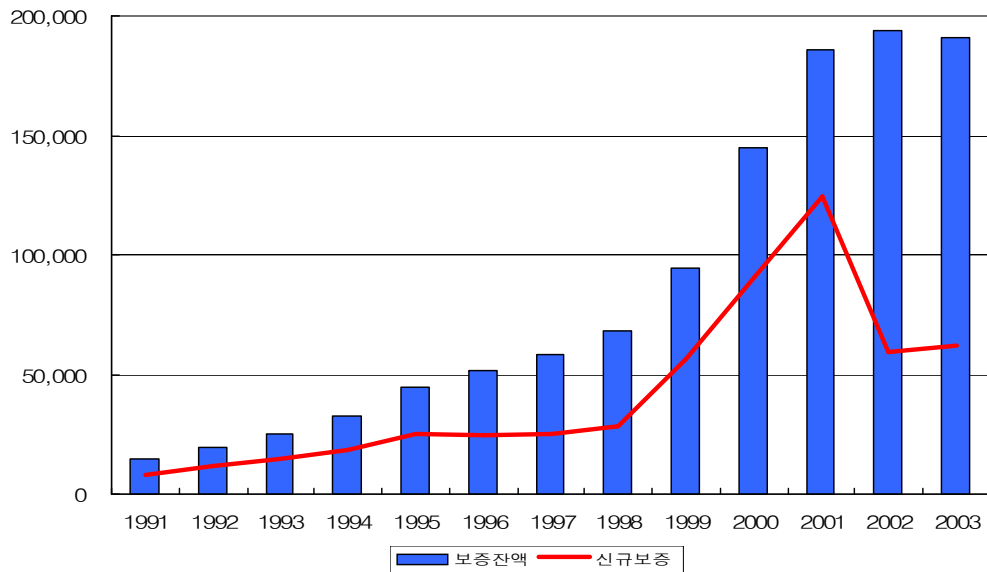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 분	금 액	구성비
위탁보증	1,000만원 이하	7.9
	1,000~2,000만원	17.4
	2,000~3,000만원	16.6
	3,000~5,000만원	21.7
	소 계	63.6
직접보증	5천만원 초과	36.4
합 계	6,655	100.0

자료: 농협중앙회

- 농신보의 신규보증액은 1999년 이후 급증하여 2001년에 12조 4,684억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002년 이후에는 6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증잔액은 2002년 이후 19조원대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II-3> 신규보증 및 보증잔액의 추이
(단위:억원)



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

- 보증료, 이자수입 등 농신보의 자체수입은 2003년까지 1조 1,811억원으로 기금조성액 2조 9,716억원의 40%에 불과하여 정부출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2003년까지 정부 출연금은 1조 6,334억원으로 기금조성액의 55%를 차지
 - 농협 및 수협의 출연금은 출연기준대출금 월중 평균잔액에 출연율 0.2%를 곱하여 산정하며, 2003년까지 농협 1,458억원, 수협 113억원 등 1,571억원이 출연됨.
- 농신보의 기금은 보증채무의 이행(대위변제)과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되어 2003년까지 2조 166억원이 지출되었으며, 2002

년 이후 대위변제 증가로 농신보 기금의 기본재산은 2003년말에 9,550억원으로 감소

○ 2000년 이후 연간 지출액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표 II-38> 기금조성 및 기본재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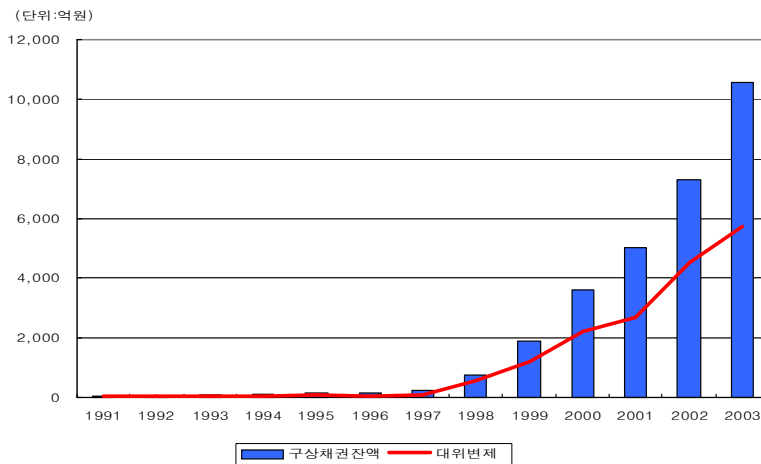
(단위: 억원)

구분			'72~'99	2000	2001	2002	2003
출연금	정 부	년도중	4,747	4,260	3,765	2,562	1,000
		누계	4,747	9,007	12,772	15,334	16,334
	금융기 관	년도중	629	191	203	227	321
		누계	629	820	1,023	1,250	1,571
보증료, 이자수입 등		년도중	6,248	1,352	1,508	1,451	1,251
		누계	6,248	7,600	9,108	10,559	11,811
기금조성액 누계			11,624	17,427	22,903	27,143	29,716
지출액 누계			5,847	8,379	11,395	15,705	20,166
기본재산			5,777	9,048	11,508	11,438	9,550

자료: 농협중앙회

□ 1997년 외환위기와 농어가부채대책 등의 영향으로 대위변제가 199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3년에 5,719억원을 기록하고 구상채권잔액은 1998년 이후 급증하여 2003년에 1조 544억원에 달함.

<그림 II-4>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잔액의 추이



- 대위변제 증가로 1999년 이후 기금운용에서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매년 적자폭이 확대되는 추세로 2003년 기금적자는 3,208억원, 2003년말 적자누적금액은 8,354억원에 달하고 있음.

<표 II-39> 기금 결산현황

(단위: 억원)

구 분	'72~'98	1999	2000	2001	2002	2003
년도중	2,219	-1,817	-1,181	-1,508	-2,859	-3,208
누 계	2,219	402	-779	-2,287	-5,146	-8,354

자료: 농협중앙회

- 1999년 이후 정부의 출연금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표 II-40> 대위변제 및 정부출연금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72~'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대위변제	888	1,202	2,190	2,695	4,533	5,719	5,864
정부출연금	3,686	1,061	4,260	3,765	2,562	1,000	3,478
출연비율(%)	415	88	195	140	57	17	59

주: 1. 2004년 정부출연금은 농어업인부채경감대책에 따른 출연금 978억원 포함
 2. 2004년 대위변제는 예상치

자료: 농협중앙회

- 농신보 기금의 여유자금은 관리기관 및 기금출연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신용도가 높아 투자위험이 낮은 유가증권(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 금융채 및 금융기관 보증채권 등)에 투자되고 있음.
 - 2003년말 현재 기금의 여유자금 8,834억원은 유가증권투자 5,091억원(57.6%), 예치금 3,743억원(42.4%) 등으로 운용

<표 II-41>

농신보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1	2002	2003
유가증권	6,182 (50.9)	6,093 (50.6)	5,091 (57.6)
예치금	5,959 (49.1)	5,960 (49.4)	3,743 (42.4)
합 계	12,141	12,053	8,834

주: 1. 2003년도부터 MMDA예금은 예치금으로 분류

2. ()안은 구성 비율

자료: 농협중앙회

6. 대손보전기금

- 대손보전기금은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지원되는 농림수산 정책자금 중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대출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임.
 - 농협법, 수협법 및 산림조합법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운용되던 대손보전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대손보전기금을 설치
 - 대손보전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은 농·수·축·인삼 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로 제한

- 1994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 의한 제1단계 구조개선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농업부문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업인의 신용부족으로 인한 대출기피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1995년에 대손보전기금을 설치함.
 -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투·융자금액이 크게 증대되었으나 일선 단위조합의 재무상태, 농어민의 신용도, 농업시설물의 담보가치 등이 불충분하여 농업정책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손실에 대한 제도적인 손실보전장치가 필요

- 농신보가 보증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고 농업정책자금의 확대공급에 따라 대출금융기관의 대손을 보전하는 장치가 필요하였음.
 - 농신보의 기능 확대로 농어민의 담보력 보완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농신보의 보증대상이 아닌 신용대출 및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은 존속

- 하지만, 대손보전기금은 관련부처가 제정한 규정 등에 의해 설립된 제도로서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함.
 - 대손보전기금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 공동훈령인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과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규정이 있음.

- 대손보전기금의 감독은 농림부, 기금운용에 관한 결정은 기금운용심의회, 관리는 농협중앙회가 수행함.
 -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은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담당 상무이고, 위원은 8명으로서 위원장 외에 농협 직원 3명, 수협 직원 1명, 산림조합 직원 1명,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림부 공무원 1명,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1명 등임.

-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사업은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따른 정책자금으로 농특회계융자금, 농안기금융자금, 농축산경영자금, 각종 부채대책자금, 기타 정책자금 등으로 제한함.
 - 축산발전기금 및 수산발전기금 대출금과 농신보 담보대출은 관련기금 또는 농신보에서 별도로 대출손실을 보전하므로 대손보전기금의 보전 대상에서 제외

<표 II-42>

금융기관별 대손보전 대상사업

금융기관	구분	계정과목
농협	농특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
	농축산경영자금	상호금융단기농사대출, 단기농사자금대출, 재정농사자금대출, 금융축산경영자금대출, 재정축산경영자금대출
	부채대책자금	농가특별자금대출,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 금융농업중기대출, 재정농업중기대출, 재정농사대출,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 저리대체자금대출
	기타자금	재정농업중기대출,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 기타재정운전자금대출, 농지구입자금대출, 국민투자기금시설대출, 국민투자기금대출, 종합개발대출, 농업개발자금대출, 외화표시차관대출, 원화표시차관시설대출, 원화표시차관대출, 세은차관대출, 대리대출,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
수협	농특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
	영어자금	금융어업자금대출, 상호어업자금대출, 재정어업자금대출, 대충어업자금대출
	부채대책자금	계통육성기금대출, 가계일반자금대출, 사채대체자금대출, 부채경감대출, 특별경영자금대출, 상호금융대체자금, 수산시설대체운전자금대출, 수산업경영개선자금대출, 2001 수산업경영개선자금대출, 중장기분할상환자금대출, 연대보증피해지원자금대출, 경영안정특별자금대출, 2004 중장기 분할상환자금, 수산업경영희생자금
기타자금	금융수산운전자금대출, 금융수산시설자금대출, 재정수산운전자금대출, 금융어선건조자금대출, 재정어선건조자금대출, 재정수산시설자금대출, 국민투자기금대출, 대충시설자금대출, 피해복구어선건조자금대출, 피해복구수산시설자금대출, 귀어가영어창업자금대출, 어업질서확립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대출	
산림조합	농특자금	농특회계, 농특회계융자금
	부채대책자금	중장기정책자금, 특별경영자금, 상환연기자금, 농업경영개선자금, 상호금융대체자금, 연대보증지원자금
	기타자금	재정자금(신규), 재정자금(회진), 농안기금대출, 재해대책자금

자료: 농협중앙회

-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전대상자금의 규모는 2003년말 현재 농협 7조 6,692억원, 수협 1조 4,015억원이며 산림조합은 2002년말에 3,417억원임.

<표 II-43>

보전대상자금 규모

(단위: 억원)

농 협	수 협	산림조합	계
76,692	14,015	3,417	94,124

주: 농협 및 수협은 2003년말, 산림조합은 2002년말 기준

자료: 농협중앙회

- 대손보전기금이 금융기관에게 보전하는 금액은 미회수 대출원금, 대출원금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약정이자,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
 - 약정이자는 상환기일까지의 이자 및 상환기일 이후 1년간 이자
- 대손보전기금은 일부 대출금에 대해서는 대손보전기금이 대출손실의 90%를 보전하고 대출금융기관이 10%를 부담하는 부분보전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부분보전 대상자금은 비농업인 정책자금, 농업경영회생지원사업자금, 대출일 현재 대손보전대상대출금 총 합계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채무자에 대한 신규 농업종합자금 대출금, 대출일 현재 대손보전대상대출금 총 합계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채무자에 대한 신규 대출금 등

<표 II-44>

부분보전대상대출금 추이

시행시기	대상자금
2003.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농어업인 정책자금 ○ 농업경영회생지원사업 ○ 대출일 현재 대손보전대상대출금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채무자에 대한 신규 농업종합자금 대출금
2004.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일 현재 대손보전대상대출금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채무자에 대한 신규 대출금

자료: 농협중앙회

- 2004년 3월말 현재 부분대손보전대상 대출잔액 6,489억원은 대손보전대상 대출잔액 7조 6,692억원의 8.5%로서 부분대손보전의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을 점하고 있음.

<표 II-45>

부분대손보전 대상대출금
(2004년 3월말 현재)

(단위: 억원)

자금종류	대손보전대상 대출잔액(A)	부분보전대상 대출잔액		B/A
		건수	금액(B)	
농특자금	25,755	1,496	3,051	11.8
농축산경영자금	29,181	10,493	599	2.1
부채대책자금	11,025	0	0	0.0
기타	10,731	1,723	2,839	26.5
계	76,692	13,712	6,489	8.5

자료: 농협중앙회

- 대손보전기금의 재원은 금융기관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외부출연금 및 수입금으로 구성됨.
 - 기금운용수익금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취득한 이자수익금, 구상채권 채무관계자로부터 회수한 손해금 등

-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대출 취급수수료의 0.5% 포인트 해당액을 출연함.
 - 대출금리가 0%인 대출과 채무자가 중앙회 및 조합인 대출에 대한 출연금 부담은 없음.
 - 각 조합들은 출연대상자금 1년 평균잔액에 0.5%를 곱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음.

- 2003년 전체 금융기관의 기금출연대상자금은 6조 512억원이었으며, 농협의 기금출연대상자금은 4조 8,871억원으로 80%를 차지하였음.

<표 II-46> 2003년 기금출연 대상자금

(단위: 억원)

구 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계
농특회계융자금	47,149	5,854	4,872	57,875
농안기금융자금	1,722	898	17	2,637
계	48,871	6,752	4,889	60,512

주: 2003.1.1~12.31까지의 평균잔액 기준

자료: 농협중앙회

- 2000년 이전의 기금출연금액은 1,406억원이고 2003년말 현재 기금 누적출연금액은 2,486억원이며, 농협은 2,108억원을 출연하여 85%의 비중을 점하고 있음.

<표 II-47> 연도별 기금출연 실적

(단위 : 억원)

금융기관	2000 이전	2001	2002	2003	계
농 협	1,219	359	283	247	2,108
수 협	136	43	38	33	250
산 립	51	28	25	24	128
계	1,406	430	346	304	2,486

자료: 농협중앙회

□ 2001년까지는 기금조성액이 기금운용액보다 커서 기금잔액이 증가하였으나, 2002년 이후에는 대손보전액이 증가하면서 기금잔액이 감소하고 구상채권잔액은 증가하는 추세로 대손보전기금의 기능축소가 우려되고 있음.

○ 2003년의 대손보전액은 58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6% 증가하여 기금잔액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구상채권잔액은 급증하고 있음.

<표 II-48> 연도별 기금조성 및 운용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00이전	2001	2002	2003	계
기금조성	1,646	486	394	360	2,886
기금출연	1,405	430	346	304	2,485
운용수익 등	241	56	48	56	401
기금운용	785	374	416	602	2,177
대손보전	694	361	403	587	2,045
사업비용	91	13	13	15	132
기금잔액	861	974	952	710	
구상채권잔액	688	1,043	1,439	2,005	

주: 1. 운용수익 등은 예치금이자, 구상채권회수이자, 채권회수 등

2. 사업비용은 사업관리비, 구상채권회수수료, 법인세 등

자료: 농협중앙회

□ 대손보전실적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농특자금(구조개선자금)의 대손보전액은 2002년 이후 감소세이나 부채대책자금, 영농자금, 수산자금 등의 대손보전액이 200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대손보전액 증가를 유발하고 있음.

<표 II-49>

사업별 대손보전실적

(단위 : 억원)

사업명		2000 이전	2001	2002	2003	계
농 협	농특자금	291	137	123	90	641
	부채대책	0	4	35	129	168
	영농자금	170	165	196	275	806
	기 타	99	24	13	12	148
	소 계	560	330	367	506	1,763
수 협	어업자금	124	19	32	72	247
산림조합	임업자금	10	12	4	9	35
계		694	361	403	587	2,045

자료: 농협중앙회

- 2004년 농업인에 대한 부채대책으로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이 장기대출로 전환됨에 따라 대손대상대출금과 장기대출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대손보전기금의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부채대책 대상자금 중 금리인하 대상자금에 대한 금리인하로 농업인의 금리부담이 감소하여 단기적으로는 대손발생 가능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리인하가 대손발생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표 II-50>

2004년 부채대책 대상자금(농협)

(단위: 억원)

대책종류	자금종류	담보 여부			
		담보	보증인	무보증	계
금리인하	20년 이상 자금	3,734	81	34	3,849
	상호금융대체자금	0	0	0	0
	경영개선자금	5,641	78	477	6,196
	계	9,375	159	511	10,045
상환연장	연대보증피해자금	343	226	15	584
금리인하 상환연장	위 자금을 제외한 증장기정책자금	13,644	11,305	4,017	28,966
부채대책자금 합계		23,362	11,690	4,543	39,595

자료: 농협중앙회

- 2004년 부채대책으로 농특자금 등의 상환기간이 연장에 따라 이들 자금의 대출잔액이 증가하여 대손보전기금 출연액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기금출연액은 2003년 304억원에서 2004년 325억원, 2008년 408억 원 등으로 증가 예상

- 2004년 부채대책으로 향후 대손보전신청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농특자금은 부채대책에 의한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으로 농업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감소하여 향후 수년간 대손보전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상호금융대체자금, 농업경영개선자금 등 2003년 이전까지 추진된 부채대책자금은 2004년 부채대책으로 상환조건이 개선되어 향후 대손보전의 감소가 예상됨.

- 하지만, 2003년 이후 대손보전신청액이 기금조성액보다 커서 특단의 대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대손보전기금은 2006년 이후 고갈되어 대손보전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표 II-51>

대손보전기금 운용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기금조성액	360	382	380	387	400	422	450
기금운용액	602	670	670	519	400	422	450
- 대손보전액	587	650	650	499	380	402	429
- 사업관리비	15	20	20	20	20	20	21
기금잔액	710	422	132	0	0	0	0
대손보전신청액	1,088	887	802	627	537	532	537

자료: 농협중앙회

Ⅲ. 외국의 농업정책금융

1. 프랑스 농업정책금융

- 프랑스의 농업인 수는 청년영농후계자 정착자금 등의 정책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 농업인 수는 1998년 1,017천명에서 2002년 665천명으로 감소
 - 신규 청년농업인 수는 1990년 12,000명 수준에서 2002년 5,500명으로 감소

- 하지만, 농업인 1인당 실질소득(1991년 유로가치 기준)은 1992년 18,000 유로에서 2002년 23,800 유로로 증가함.

- 농업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액이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안정적인 수준임.
 - 이자지급액이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에 18.3%까지 상승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11.8%~12.2%를 유지

- 농업투자는 농기계 등 시설재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02년 총 농업투자액은 107억 유로이며, 농기계 구입 48억 유로, 농장 등 건축물 투자 24억 유로, 농지구입 18억 유로 등으로 농업을 위한 기반투자에 사용

- 정부 및 EU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농업정책대출은 중장기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업인의 단기운영자금에 대한 농업정책대출은 없음.
 - 농업정책대출의 지원기준은 생산비 절감, 생산방식 개선, 품질 개선, 환경의 보존 및 개선(친환경농업), 위생과 관련된 규범의 존중, 농업활동의 다각화 등임.

- 농업정책대출은 2개 그룹으로 구분되며, 1그룹 대출에 대해서는 프랑스 정부와 EU가 금리차액을 보전하고, 2그룹 대출은 프랑스 정부만 지원하고 있음.
 - 1그룹에는 청년영농후계자정착자금(EU 지원 50%, 프랑스 정부 지원 50%)과 농업경작현대화자금(EU 지원 25%, 프랑스 정부 지원 75%)이 있음.

- 농업정책대출 중에서 청년영농후계자정착자금과 농업경작현대화자금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특별히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있음.
 - 청년영농은 원칙적으로 농토임대를 권장하여 농업정책대출로 농지구입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청년영농후계자정착자금은 농업인 육성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EU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정착자금 공여와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음.
 - 청년영농후계자정착자금의 수혜자는 매년 6,000명(프랑스 전체 농업인 수는 현재 약 60만명) 수준임.
 - 청년영농후계자정착자금에 대해 적용되는 금리는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EU와 프랑스 정부가 각각 보조금의 50%를 부담하고 있음.
 - 청년영농후계자정착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경제적 타당성, 생산하고자 하는 농산물의 적정성, 농업인의 교육이수, 유럽규범에 맞는 경작 등이 입증되어야 함.
 - 2003년의 청년영농후계자정착자금 대출규모는 6.9억 유로로 농업정책대출의 40%를 점하고, 금리차이 보전을 위해 2.6억 유로(EU 지원금액 포함)가 지원되었음.

- 농업경작현대화자금은 EU가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청년영농후계자정착자금을 추가하여 지원이 가능함.

- 농업경작현대화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 등 투자목적
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2003년에 농업경작현대화자금 대출은 6.4억 유로
- 1970년대 이전의 고금리 시대에는 농업정책대출이 농업인에게 매우
중요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은행대출금리의 하락, 정부지원의
감소,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가용성 제고 등에 의해 농
업정책대출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있음.
- 현재 농업정책대출은 전체 농업대출의 20%를 점유
- 농업대출은 위험부담이 높고 지역별로 독점적인 특성이 있어 은행
의 일반대출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음.
- 현재 시행되는 금리는 주택대출 1.50%, 기업대출 2.90%, 농업대
출 4.20%, 개인상업대출 6.50%임.
- 농업인의 90%를 고객으로 하며 농업대출의 주요 공급기관인 CA의
총 대출에서 농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농
업정책대출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임.
- CA의 총 대출에서 농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9%에
서 2003년 13%로 감소
 - CA의 2003년 신규 농업대출 5,619백만 유로 중 농업정책대출은
14%인 789백만 유로에 불과
 - CA의 2003년말 현재 농업대출잔액 279억 유로 중에서 농업정책
대출잔액은 55억 유로로 20%를 점유

<표 III-1>

CA의 농업대출 현황

(단위: 백만 유로)

	1999	2000	2001	2002	2003
정책자금 대출	1,088	1,155	1,071	942	789
비정책자금 대출	4,277	3,788	3,673	4,381	4,821
합 계	5,365	4,943	4,744	5,323	5,619

자료: Credit Agricole

- 선진국인 프랑스에서 아직도 농업정책대출이 시행되는 이유로는 농업인들이 농업정책대출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EU 차원에서 청년 농업인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음.
- 농업정책대출은 1989년까지 CA가 독점적으로 공급하였으나, 1990년 이후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참여가 허용되어 농업정책대출 및 농업대출에서 CA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 전 금융기관 농업대출 중에서 CA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85.0%에서 2003년 72.0%로 감소
 - 농업정책대출 중 CA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95.0%에서 2003년 79.6%로 감소

<표Ⅲ-2> 농업대출의 금융기관별 비중

금 융 기 관	199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Credit Agricole	85.0	77.0	72.8	70.2	70.2	71.7	72.0
Credit Mutuel	3.9	11.5	10.6	11.4	11.9	12.2	11.6
Banque Populaires	0.7	4.3	4.6	5.4	5.7	5.9	5.6
BNP	1.8	2.5	2.8	3.3	3.8	3.1	3.8
Credit Lyonnais	1.5	1.5	4.6	1.5	1.5	0.8	0.6
Societe Generale	2.1	0.7	0.6	0.6	0.2	0.2	0.2
Etablissements Financiers	4.8	2.4	4.1	7.6	6.5	6.1	6.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Credit Agricole

<표 III-3>

농업정책대출의 금융기관별 비중

금융기관	199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Credit Agricole	95.0	86.7	85.6	85.0	84.6	82.1	81.2	79.6
Credit Mutuel	4.3	9.0	9.4	9.4	9.6	11.1	11.8	12.0
Banque Populaires	0.4	3.1	3.6	4.3	4.4	5.2	5.3	6.5
BNP	0.2	0.6	0.8	0.8	0.8	1.0	1.1	1.0
Credit Lyonnais	-	0.6	0.6	0.5	0.6	0.6	0.5	0.6
CIC	-	-	-	-	-	-	0.1	0.3
Societe Generale	0.1	-	-	-	-	-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Credit Agricole

- 농업정책대출 취급금융기관은 매년 정부가 주관하는 경쟁입찰에 참여한 은행 및 전국조직의 금융기관 중에서 재무부와 농림부에 의해 선정되고 있음.
 - CA 등 6개 금융기관은 2003년 경쟁입찰에 의해 2003~2006년 기간 중에 농업정책금융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였음.

- 경쟁입찰시 금융기관들은 3년간 대출계획을 제출하지만 주요 내용은 농업정책대출 취급시 적용할 추가금리에 대한 것이며 대출금액에 대한 입찰은 없음.
 - 추가금리의 상한은 0.5%로 제한되고, 현재 CA 등 5개 금융기관은 0.5%, Credit Mutuel은 0.4%의 추가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 추가금리는 첫해를 기준으로 입찰에 의해 결정되며, 이후 매년 0.05%p씩 인하되고 있음.
 - 즉, 1차년도 추가금리가 0.5%이면, 2차년도 0.45%, 3차년도 0.40%가 적용됨.

- 정부는 경쟁입찰에 의해 결정된 농업정책대출 취급금융기관과 3년간 농업정책대출 취급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농업정책대출에 대해 추가금리 외에 관리수수료로 0.7%를 지급함.
 - 재무부, 농림부, 대출취급 금융기관 간에 농업정책대출 관련 추

가금리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으나, 면담한 Regional Bank의 실무자 견해에 의하면 CA 입장에서 농업정책 대출은 추가금리와 관리수수료를 감안할 때 수익성이 충분함.

- 농업정책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에 추가금리를 가산한 적용금리임.
 -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조사한 지난 분기에 일반은행이 신규로 취급한 15,245 유로 이상 45,735 유로 이내의 중장기대출금리의 산술 평균치임.

<표 III-4> 2003년 농업정책대출 금리

기관	추가금리(A)	기준금리(B)	적용금리(A+B)
BNP Paribus	0.5%	5.17%	5.67%
Banque Populaires	0.5%	5.17%	5.67%
CIC	0.5%	5.17%	5.67%
Credit Agricole	0.5%	5.17%	5.67%
Credit Lyonnais	0.5%	5.17%	5.67%
Credit Mutuel	0.4%	5.17%	5.57%

주: 기준금리와 적용금리는 2003년 5월 1일 기준

자료: Credit Agricole

- 농업정책대출 취급금융기관은 대출에 대하여 적용금리인 5.67%를 적용(Credit Mutuel은 5.57%)하고, 농업인은 정부가 정책대출별로 정한 특혜금리를 부담하고 있으며, 정부는 금융기관 적용금리에 의한 이자와 농업인이 부담하는 이자간의 차액을 금융기관에 보전하고 있음.

- 정부가 금리차이를 보전하는 농업정책대출로는 농업경작현대화자금 대출, 시설특별대출, 특별 CUMAs 대출, 특별 목축대출, 특정농작물 생산 대출, 농작물재해 대출 등이 있으며, 청년영농후계자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이 있음.
 - 또한, 오지 농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일반 평야지 농업인보다 낮게 하여 오지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음.

- 농업정책대출의 대출비율한도를 책정하여 농업인의 자체자금 투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출종류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음.

- 농업정책대출은 시설투자 등을 위한 중장기대출이며, 대출종류별로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음.
 - 자연재해 등 특별한 우발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단기자금 대출이 가능함.

<표 III-5>

농업정책대출 조건

대출종류	대출비율한도	농민부담금리	대출기간	대출최고기간	대출한도
농업경작현대화자금 청년농업인	부동산: 90% 설비투자 개선: 80% 대체: 40%	오지: 2% 평야: 3.5%	12년 9년	15년 부동산: 20년	UTH: 72,000 유로 환경관련 초과한도: 19,100 유로
기타 농업인		오지: 3% 평야: 4%	12년 9년		경영체: 144,000 유로 온실: 366,000 유로
시설 특별대출 청년농업인	70%	오지: 2% 평야: 3.5%	15년 12년	15년	96.1.1 이전 부담: 84,000 유로 실행: 100,000 유로
기타 농업인					96.1.1 이후 부담: 95,000유로 실행: 110,000유로
특별 CUMA 대출 (MTs-CUMA)	설비투자 개선: 80% 대체: 40%	오지: 3% 평야: 4%	12년 9년	12년	회원 15명 미만 부담: 191,000 유로 실행: 305,000 유로 회원 15명 이상 부담: 275,000 유로 실행: 420,000 유로
특별 목축대출 돼지와 가금류 사육 기타 사육 임대가축시설	70%	4%	12년 8년	18년 18년 7년~15년	부담: 58,000 유로
특정농산물생산 대출 (PPVS)	70%	4%	9년	18년	부담: 153,000 유로
농작물재해 대출* 수확 손해 정상조건 청년농업인 및 손해>35% 본질적 손해		-1.5% -2% -2.5%	4년 7년 15년	4년 7년 15년	15,300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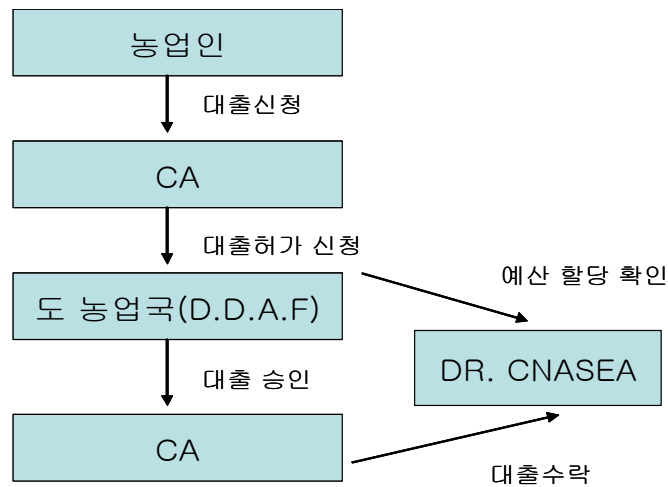
주: 농작물재해대출의 경우에 농민부담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차감하는 비율

자료: Credit Agricole

- 농업정책대출은 원칙적으로 신용대출로서 정책대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대출신청시 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 농업정책대출 심사 시에는 농업인의 경영능력(또는 협동조합 간부 등이 평가한 농업인의 능력), 농업인이 제출한 사업계획, 생산하고자 하는 상품의 시장성 등의 기본요건을 검토
- 농지구입을 위해서는 농업정책대출을 사용할 수 없으며, 농업정책대출은 생산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하고 있음.

- 농업인이 농업정책대출을 받는 경우에 시장금리보다 매우 낮은 특별금리를 적용받으므로 농업정책대출 심사 시에는 신용조사 등에 관한 제출서류와 절차를 매우 복잡하게 하여 꼭 필요한 농업인만이 농업정책대출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제출서류와 절차를 번거롭게 함으로써 농업인들로 하여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과 수익성에 대해 재삼 숙고하게 하여 농업정책대출의 부실운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있음.
- 또한 농업정책대출 사용 시에는 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제약조건이 많아 농업인들은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과의 금리차이를 감안하여 농업정책대출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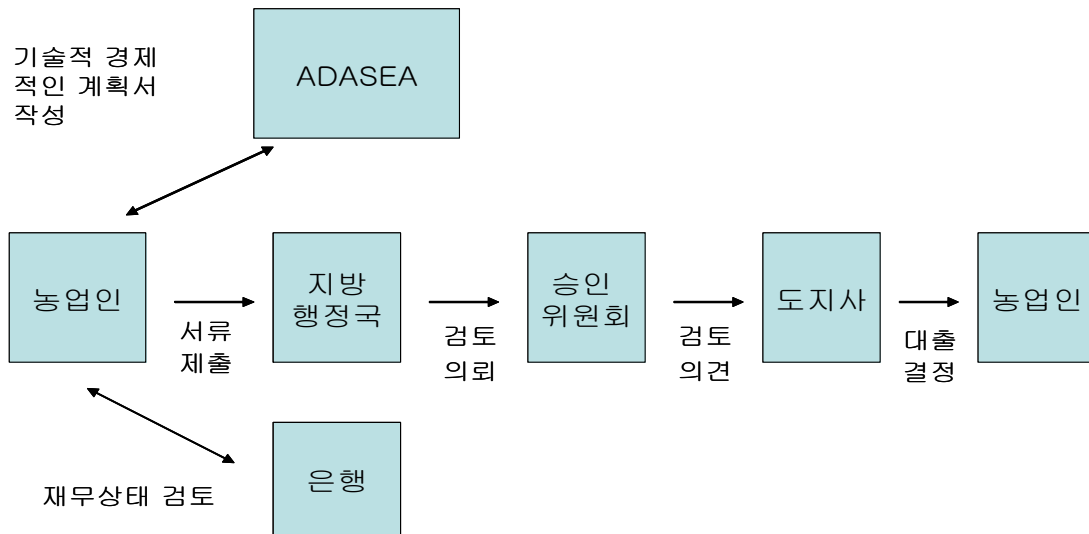
<그림 III-1> 농업정책자금 대출절차
(그룹1 및 그룹 2 정책자금)



* DR. CNASEA는 “농업경작구조 및 관리센터”로서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집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그림 III-2>

현대화시설자금 대출절차



- 농업정책대출을 받은 농업인의 원리금 상환시 연체가 발생하면 정부는 이차차액 보전을 중지하고 차입한 농업인은 대출은행이 적용하고 있는 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대출은행은 대출금 회수 책임을 부담함.
 - 즉, 농업정책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은 농업인의 경영부실로 인한 손해(신용위험)를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함.

- CA는 현재 상업적 차원에서 농업정책대출 등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보험상품의 도입을 고려중이나 농업인의 비용부담이 과다하여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농업인에 대한 보험은 자연재해 발생시 농업정책대출의 원리금 지급 유예 등이 있음.

- 농업인에 대한 컨설팅 기관과 농업정책대출 금융기관은 상호 독립된 기관으로 두 기관간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업무차단벽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음.
 - 농업정책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독자적으로 작성하기 어려워 컨설팅 기관이 농업인과 상의하여 작성하고 있음.

- 농업금융을 위한 협동조합과 경제사업을 위한 협동조합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조직으로 경제사업을 위한 협동조합은 경제사업체로 성장하고 있으며 조합별로 규모가 매우 다양함.
 - 예를 들면, 우유로 치즈를 생산하는 사업은 3,600개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은 전체적으로 자회사로 일반법인 1,500개를 소유하고 있음.

2. Credit Agricole

- Credit Agricole 그룹 중 농업대출부문은 사업지주회사인 Credit Agricole S.A., 국내금융을 담당하는 Regional Bank, Regional Bank의 주주인 Local Bank로 구성되어 있음.
 - 2003년 말에 Regional Bank는 44개(2004년에 43개로 감소), Local Bank는 2,629개
 - 프랑스의 행정구역상 도의 수는 22개로 Regional Bank는 도당 평균 2개가 존재
 - * 경제규모에 따라 도별로 Regional Bank 수는 상이
- Credit Agricole S.A.는 Credit Agricole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그룹 전체의 주요한 금융정책을 결정하고, Credit Lyonnais은행, 보험회사 등 다양한 금융전문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으며, Regional Bank들의 상위기관으로서 Regional Bank를 위한 중앙은행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 Credit Agricole S.A.는 Regional Bank 주식의 25%를 소유하고 Regional Bank는 Credit Agricole S.A. 주식의 52%를 소유하는 상호출자를 하고 있음.
- Regional Bank는 Credit Agricole 그룹의 중심기관으로서 Credit Agricole S.A.의 대주주이며 농업대출 등 국내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Regional Bank는 SAS Rue La Boetie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Credit Agricole S.A.의 지주회사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 SAS Rue La Boetie는 Credit Agricole S.A. 지배를 목적으로 한 명목회사(paper company)임.
 - Regional Bank는 연합체로서 전국농업신용연합회(Federation Nationale de Credit Agricole: FNCA)를 구성하여 Credit Agricole S.A.와 Regional Bank 간의 업무를 조정함.
- 지역경제의 쇠퇴와 금융사업에서 규모의 경제 추구 등의 이유로 Regional Bank의 자발적인 통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Credit Agricole S.A.는 Regional Bank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고 통합을 권고하지만, 통합에 관한 최종결정은 지역 Regional Bank들이 정치적으로 결정
 - Regional Bank 통합시 부실해소를 위한 정부나 Credit Agricole S.A.의 자금지원은 없음.
- Regional Bank는 단기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운용하고 장기자금은 Credit Agricole S.A.로 이전하여 그룹 전체적인 관점에서 운용하고 있음.
- Regional Bank가 장기대출을 위해 장기자금이 필요하면 Credit Agricole S.A.에서 차입
 - Regional Bank의 수신금리는 지역별 특성에 의해 상이하며, 파리 지역과 지방간에는 약 0.5%p의 금리차이가 형성되고 있음.
- Local Bank는 540만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Regional Bank의 주주이며, 직접 금융업무나 경제사업은 영위하지 않고 있음.
- Regional Bank와 관련된 Credit Agricole S.A.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CA 그룹 전체의 전반적인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의 보증
 - Regional Bank의 금융업무 취급이 법적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감시기능

- Regional Bank의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선임 승인
- 관련 법률에 의해 Regional Bank의 경영부실시 관련자 징계
- CA 그룹 전반의 자산부채종합관리 정책의 결정
- CA 그룹내 예금의 집중 및 배분
- 채권 및 주식연계증권의 발행

□ Credit Agricole S.A.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Credit Lyonnais의 국내 영업망을 활용한 소매금융
- Private banking
- 기업금융 및 투자은행 업무
-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지원 및 유지
- 국제영업의 개발

— Credit Agricole S.A. 자회사 및 자회사의 주요업무

Credit Lyonnais France	Retail banking
CALYON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ing
CAI Chevreus	Brokerage
UI	Private equity
CA Investor Services	Custody
CAIS, BGPI	Private banking
CAAM, CLAM, BFT, CPR	Asset management
PREDICA, UAF	Life insurance
PACIFICA	Casualty and property insurance
CEDICAM	Means of payment
SOFINCO, FINALION, FINAREF	Consumer credit
UCABAIL, LIXBAIL	Lease finance
EUROFACTOR, TRANSFACT	Factoring
UNI-EDITIONS	Magazines

< Regional Bank의 대출업무 >

- 농업자금의 대출기간은 대출종류별로 차등화하고 있음.
 - 건물 및 토지 구입자금 대출: 10~15년
 - 대형기계 구입자금 대출: 5~7년
 - 소형기계 구입자금 대출: 2~5년
- 농업자금의 대출절차
 - 전체 지점에서 약 50명의 농업대출 전문가가 10,000명의 농업인 고객을 상담
 - 본점에 10명의 전문가가 재무위험 등을 관리하며 대출을 결정
 - 대출위험이 크거나 대출액이 200,000 유로 이상인 고액대출은 매주 개최되는 지점의 위원회에서 대출을 결정
- 지점장이 결정할 수 있는 대출한도는 정상적인 경우 500,000 유로 이하, 정상에 미흡하여 신용위험이 큰 경우 150,000 유로 이하이며, 그 외에는 모두 본점에서 대출을 결정

3. 미국의 농업정책금융

- 미국의 농업정책금융은 농업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의 농장지원공사(Farm Service Agency: FSA)가 담당하고 있으며, FSA가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직접 제공하는 직접대출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농업인에 대한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보증대출로 구분됨.
 - FSA의 본사는 워싱턴에 있고, 각 주에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음.
 - 농업정책금융의 자금용도는 토지, 가축, 시설, 사료, 종자 등의 구입과 건물신축 및 농장시설 개선, 생계비 지원 등 매우 포괄적임.
- 미국의 농업정책금융은 일시적으로 민간상업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보증대출을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음.

- 하지만, 보증대출의 경우에도 농업대출을 취급한 민간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일부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므로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농업인을 위한 직접대출도 시행하고 있음.
- 농업정책금융은 주로 신용도가 낮고 자산이 불충분하여 일반상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신규농업인(beginning farmers)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해 재무적 곤란에 처한 농업인과 재원부족으로 농장운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농업인도 지원하고 있음.
- FSA가 일반 상업금융기관의 농업대출에 대해 제공하는 신용보증은 부분보증으로 보증한도는 대출 원리금 및 이자의 90%가 일반적이거나, FSA의 농가신용보증프로그램의 부채상환을 위한 자금 등인 경우에는 95% 보증도 가능함.
 - FSA는 농업대출에 수반되는 위험을 평가하여 보증비율을 결정
- 대부분의 경우에 FSA는 대출의 보증부분에 대하여 1%의 보증료를 적용하여 보증료를 징구하고 있음.
 - 하지만, 금리보조대출, 대출금의 50% 이상이 기존의 FSA 대출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대출, 신규농업인을 위한 농장소유계약금 대출 프로그램 또는 특정 주의 신규농업인 프로그램과 관련된 대출 등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있음.
- 농업정책금융을 취급할 수 있는 상업금융기관은 농업대출실적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으로서 FSA와의 계약에 의해 농업정책금융을 취급할 수 있으며, 통상 계약기간은 3년이나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은 공인대출기관프로그램(certified lender program)에 의해 5년 계약도 가능함.
 - 공인대출기관프로그램에 의한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은 공인금융기관(certified lender)과 우수금융기관(preferred lender)으로 구분하여 금융업무 취급에 차별을 시행하고 있음.

- 직접대출은 농업인이 FSA 지역사무소 및 농업부 지원센터(USDA Service Center) 등에 필요자금을 신청하고, 보증대출은 농업인이 일반 상업금융기관에 신청하고 이들 금융기관들이 FSA에 신용보증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직접대출을 위한 재원은 매년 국회에서 농업부 예산의 일부로 할당되며, 예산 등의 제약으로 충분한 직접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농업인이 직접대출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경우도 있음.

- 2004 회계연도(2003.10.1~2004.9.30)의 농업정책금융 예산은 3,523백만 달러이며, 농장운영자금대출은 2,132백만 달러로 60%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I-6>

**미국 농업정책금융 예산
(2003.10.1~2004.9.30)**

(단위: 백만달러)

대출종류	예산	집행실적
농장운영자금 직접대출	615	532
농장운영자금 보증대출 - 무보조	1,246	790
농장운영자금 보증대출 - 이자보조	271	252
농장소유 직접대출	128	118
농장소유 보증대출	964	789
긴급자금대출	197	24
기타	102	26
합계	3,523	2,531

주: 집행실적은 2004. 6. 9 까지 집행된 실적임.

자료: Farm Service Agency

- FSA는 일반 상업금융기관이 대출손실의 일부를 부담하는 보증대출을 받을 수 없는 농업인에 대하여 직접대출을 제공하며, 농업인이 직접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환능력과 대출금액을 전액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직접대출의 경우에, FSA는 대출과 관련된 담보자산의 적정성, 농업자금 사용목적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며, 농장경영 평가에 의해 농업인에게 금융거래관련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감독기능을 수행함.
- 농업정책금융을 위한 담보는 대출종류에 따라 담보물건에 차이가 있어 농장소유대출은 부동산 및 동산의 담보를 요구하고, 농장운영자금대출은 농작물 등 농업생산물, 가축, 기계시설 등에 대한 담보권, 부동산 및 동산의 담보, 낙농업의 경우에는 수익의 양도 등을 요구하고 있음.
 - FSA는 원칙적으로 대출금액의 150%를 담보로 요구하고 있으며, 담보의 최소한도는 대출금액의 100%임.
- FSA의 농업정책금융은 농장소유대출(Farm Ownership Loans), 농장소유계약금대출(Farm Ownership Down Payment Loans), 농장운영자금대출(Farm Operating Loans), 긴급자금대출(Emergency Loans), 신규농업인대출(Targeted Funds to Beginning Farmers), 지역청년대출(Rural Youth Loans) 등으로 구분되고 있음.
- 농장소유대출은 농장의 구입, 기존농장의 확장, 농장 시설물의 구축 및 개수, 농장 환경의 개선 등에 사용되며, 대출한도는 직접대출 200,000달러, 보증대출 782,000달러이며, 대출기간은 40년 이내임.
 - 보증대출한도는 매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되고 있음.
- 농장소유 직접대출의 경우, 타 금융기관이 차입금액의 50% 이상을 대출하면 FSA는 4.0% 이상의 특별금리를 적용하여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 특별금리는 정상금리 6.0%에 비해 1.0%p 낮은 5.0%를 적용하고 있음.

<표 III-7>

미국 FSA의 농업정책금융 종류
(2004. 2 현재)

종류	대출 한도	금리 및 대출기간	용도
직접 대출	농장소유	200,000 달러 · 대출기간: 40년 이내 · 금리: 6.0% · 타 금융기관이 차입금액의 50% 이상 대출시 금리는 5.0% 적용 * 상황이 어려운 차입자에 대한 일시적 저금리 적용	· 농장구입 · 건물 및 시설물 건설 ·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신규농업인 농장 소유	구입가격 또는 평가금액의 40% 이내 · 대출기간: 15년 · 금리: 4.0%	· 농장 및 목장 구입
	운영자금	200,000 달러 · 대출기간: 1~7년 · 금리: 4.375% * 상황이 어려운 차입자에 대한 일시적 저금리 적용	· 가축, 종자, 가금류 사료 농기계, 비료 등의 구입 · 토양 및 수자원 보존 · 일정조건의 부채상환
	긴급자금	실제손실의 100% 또는 500,000 달러 · 대출기간: 비부동산 손실은 1~7년, 부동산 손실은 40년 · 금리 : 3.75%	· 자산의 복구 및 대체 · 재해생산 비용 지급 · 필수적인 생계비 지급 · 농장 경영 재구축 · 일정조건의 부채상환
보증 대출	운영자금	782,000 달러 · 대출기간: 1~7년 · 금리: 금융기관의 농업대출 금리 이내 * 상황이 어려운 차입자에 대해서는 4% 차감금리 적용	· 가축, 종자, 가금류 사료 농기계, 비료 등의 구입 · 토양 및 수자원 보존 · 부채상환
	농장소유	782,000 달러 · 대출기간: 40년 이내 · 금리: 금융기관의 농업대출 금리 이내	· 농장구입 · 건물 및 시설물 건설 · 토양 및 수자원 보존 · 부채상환

농장소유 보증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농업대출 금리 이내로 제한되고 있음.

농장소유계약금대출은 주로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대출금액은 농장매입가격 또는 농장평가금액 중 적은 금액의 40% 이내에서 직접 대출 형태로 제공되고 대출기간은 15년 이내이고 금리는 4%임.

○ 농장매입가격 및 농장평가금액은 250,000달러 이내로 제한되고 있음.

- 농장소유계약금대출의 경우 신규농업인은 자체자금으로 계약금의 10% 이상을 지불하여야 함.
 - 직접대출 등에 의해 조달되고 남은 잔여금액을 일반상업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경우에는 FSA가 보증을 제공함.
- 농장운영자금대출은 농업인에게 단기운영자금을 공급하는 자금으로 대출한도는 직접대출 200,000 달러, 보증대출 782,000 달러이고, 대출기간은 7년 이내로서 대출사업의 자금소요기간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고 있음.
- 농장운영자금대출은 주로 통상적인 농장운영비용, 기계 및 장비 구입자금, 부동산 개수비용, 가계비용, 일정조건의 부채상환자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보증대출한도는 매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있음.
- 농장운영자금 직접대출의 금리는 4.375%이고, 보증대출의 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농업대출금리 이내로 제한되고 있음.
- 금리보조프로그램(Interest Assistance Program)에 의해 금리를 보조받는 농업인은 농장운영자금 보증대출에 대해서 4%의 금리 차액을 FSA에 의해 보조받고 있음.
- 긴급자금대출은 대통령이 선포한 재해지역이나 농업부장관이 지정한 재해지역에서 발생한 시설 및 생산물의 손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자금으로 FSA의 직접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음.
- 긴급자금대출은 500,000 달러 한도 내에서 생산물 및 시설 손해의 100%까지 제공이 가능함.
- 미국 의회는 매년 농장소유대출, 농장운영자금대출 등의 일정비율을 신규농업인대출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 신규농업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며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10년 이내인 자로 제한하고 있음.

- 현재, 신규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대출의 할당비율은 농장운영자금 직접대출 35%, 농장운영자금 보증대출 40%, 농장소유 직접대출 70%, 농장소유 보증대출 25%로 정해져 있음.

4. 일본 농림어업금융공고

- 일본 농림어업금융공고(“농림공고”)는 1953년 4월 정부출자에 의해 설립된 정부금융기관으로 주로 국고인 재정투융자자금을 재원으로 한 농업정책금융의 관리와 배분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 농림공고는 농업, 임업, 어업, 식품가공 및 유통업 등에 관한 정부정책과 관련된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농업관련 대출이 전체대출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음.

<표Ⅲ-8> 농림공고 산업별 대출실적

(단위: 억엔)

구분	대출잔액	대출금액
농업	19,336	1,922
임업	9,770	772
어업	1,046	116
식품가공 및 유통업	6,256	900
계	36,408	3,711

주: 대출잔액은 2003.3.31 현재금액, 대출금액은 2002 회계년도 실적
 자료: 일본 농림어업금융공고

- 농림공고의 2002년 3월말 현재 자본금은 3,116억엔, 직원 수는 938명, 지점 수는 22개, 대출잔액은 3조 6,408억엔임.
 - 2002 회계연도의 대출약정금액은 3,711억엔
- 농업정책대출은 전반적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서 농림공고 대출도 규모 면에서 뿐만 아니라 비중 면에서도 꾸준히 감소하여 2002년의 농림공고 대출은 1,934십억엔으로 전체 농업대출의 8.8%를 기록함.

<표 III-9>

농림공고 농업대출 추세

(단위: 십억엔, %)

	1998	1999	2000	2001	2002
농업대출 합계	23,878	23,417	23,030	22,501	21,882
농림공고 대출	2,534	2,380	2,219	2,066	1,934
농림공고 비중	10.6	10.2	9.6	9.2	8.8

주: 회계년도말 기준

자료: 일본 농림어업금융공고

- 농림공고의 농업정책금융은 농림공고 지점을 통한 직접대출과 농협 등 대항금융기관을 통한 대항금융기관대출로 나누어짐.
 - 일반적으로 농업정책금융은 농림공고가 대출을 승인하나, 소액 대출에 대해서는 대항금융기관이 대출을 승인
 - * 대출심사 시에는 차입계획의 정부정책목표와의 부합 여부, 대출금 회수를 위한 신용심사 등을 수행
 - * 신용심사 시에는 사업의 자금흐름계획, 자금조달계획, 상환계획, 담보조건, 연대보증 등을 검토

- 2002 회계연도의 농업정책금융 중에서 직접대출은 43%, 위탁대출은 57%로 위탁대출의 비중이 높으며, 도도부현 농업연합회는 수는 적으나 농업정책금융의 취급비중은 24%로 높고, 상업은행 및 신용금고는 취급기관 수는 많으나 취급비중은 15%에 불과함.

<표 III-10>

농업정책금융 대출별 비중
(2002 회계년도)

구분	비중(%)
직접대출	43
위탁대출	57
도도부현 농협연합회	(24)
상업은행 및 신용금고	(15)
농림중앙금고	(10)
기타	(8)

자료: 일본 농림어업금융공고

- 직접대출은 주로 농지개선사업 등 공공성이 강한 대규모사업, 농림공고 대행금융기관과 금융거래가 없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대행금융기관대출은 농림공고와 금융기관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대행금융기관은 농림공고와 계약에 의해 대출실행, 대출금 회수, 대출에 따른 대손위험 등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 이러한 책임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농림공고는 대행금융기관에게 대출금액과 이자지급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지불
- 농림공고의 농업정책금융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금융기관 수는 2003년 3월말에 278개이며, 이 중에서 상업은행과 신용금고가 각각 105개와 91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Ⅲ-11>

대행금융기관 현황
(2003년 3월말 현재)

금융기관명	수
농림중앙금고	1
도도부현 농협연합회	45
도도부현 어협연합회	33
농협 중앙회	1
상업은행	105
신용금고	91
신용금고 중앙회	1
기타	1
계	278

자료: 일본 농림어업금융공고

- 일본의 민간상업금융기관들은 농업대출을 회피하여 정부금융기관인 농림공고가 농업정책금융을 관장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농업대출은 2003년 말에 86.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농업정책금융의 취급기관이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농업정책자금은 농협을 통해 배분되고 있음.
- 일본의 민간상업금융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농업대출을 회피하고 있음.
 - ① 농업대출의 상환기일이 장기임.
 - ② 자연환경변화에 따라 농업생산 및 생산물가격이 급변하여 농업대출의 신용위험이 높음.
 - ③ 농업대출은 주로 소액거래로 관리비용이 높음.
 - ④ 소규모 영농으로 농업의 수익성이 낮음.
 - ⑤ 농지매매가 제한되어 농지의 담보가치가 낮음.

<표Ⅲ-12>

금융기관별 농업대출잔액
(2003. 3월말 현재)

(단위: 십억엔, %)

금융기관	금액	비중
민간 금융기관	982	4.5
협동조합	18,898	86.4
농림공고	1,934	8.8
기타 정부 금융기관	68	0.3
합계	21,882	100.0

자료: 일본 농림어업금융공고

- 농림공고의 농업정책금융 수행을 위한 예산은 매년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농업정책금융을 위한 재원은 정부의 재정투융자예산, 기금차입,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음.
 - 농림공고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2001년에 시작

-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함에 따라 농림공고의 자금조달비용은 채권 만기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대출금리도 원칙적으로 대출기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음.
 - 공공적 특성이 강한 자금의 금리는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으며, 농업, 임업, 어업 등에 대한 대출금리는 만기에 관계없이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있음.
 - 그러나 식품가공 및 유통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 농업정책금융의 대출금리가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2003년 3월말 농림공고의 대출금리 평균은 2.98%로 차입금리 평균 3.72%보다 낮아 구조적으로 매년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농림공고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지원금을 공여하여 2001 회계연도에 674억엔, 2002 회계연도에 537억엔 등이 제공됨.

- 농업정책자금은 농림공고 대출, 농업근대화자금, 농업개량자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농림공고 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농림공고 대출은 농림공고가 대출을 주도하는 자금으로 대출기간이 장기이며 금리는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음.
 - 농업근대화자금은 농협 등 민간금융기관이 자체자금을 사용하여 대출을 주도하며 대출기간은 중장기(5년~15년)이고 정부(농산어촌진흥기금 등) 및 지방자치단체가 금리를 보조하여 금리는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음.
 - 농업개량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예산 및 기금을 사용하는 무이자자금으로 신생산기술 도입 및 신규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중기대출을 하며 대출한도는 비교적 소액임.

**<표 III-13> 농업정책자금별 대출실적
(2001 회계연도)**

종류	재원	대출기관	대출기간	금리	대출금액(억엔)
농림공고 대출	주로 차입금	농림공고	장기	저금리	2,028
농업근대화자금	농협자금	농협	중장기	저금리	807
농업개량자금	정부예산 등	지방자치단체	중기	무이자	75

자료: 일본 농림어업금융공고

- 농림공고는 대출고객을 정상, 요주의, 파산위험, 실질적 파산, 파산 등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로 대손을 추정하고 있으며 파산위험, 실질적 파산, 파산 등 부실그룹의 비중은 2002 회계연도에 3.9%에 달하였음.
 - 2002 회계연도에 3조 6,733억엔의 대출에 대하여 707억엔을 대손으로 계상하여 처리함.

**<표Ⅲ-14> 농림공고 신용그룹별 대출현황
(2002 회계연도)**

신용그룹	대출금액(억엔)	비중(%)
정상	28,889	78.6
요주의	6,432	17.5
파산위험	866	2.4
실질적 파산 및 파산	546	1.5
계	36,733	100.0

자료: 일본 농림어업금융공고

IV. 우리나라 농업정책금융 개선방안

1.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 확대

- 농업인이 이용하는 자금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정책자금을 농협, 산림조합 등 농업금융기관들이 독점 공급함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정보의 비대칭성 등 농업금융시장의 불완전성으로 농업정책금융은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이 낮아 농협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농업인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농업금융개혁위원회 등은 농협의 농업정책금융 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취급금융기관을 확대함으로써 농업정책금융시장에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 과거에는 농촌금융시장이 농가금융 위주로 형성되고 은행 등 상업금융기관은 농촌진출을 회피하여 농촌금융시장에서 농협의 자연독점 현상이 초래되었음.
 - 농촌금융시장의 소규모적 특성으로 인하여 상업금융기관의 농촌진출은 경제성이 매우 낮았음.

- 하지만, 최근에는 농촌경제의 성장으로 농촌금융시장의 소규모적 특성은 약화되고 전자정보기술의 발달로 금융기관의 농촌진출에 따른 비용부담이 감소하여 상업금융기관의 농촌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 또한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기술혁신으로 금융수요자의 금융수요가 다양화되고 보다 양질의 금융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농업정책금융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농업인의 수요에 부응하여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농업정책자금의 공급체계를 보다 시장 지향적으로 개편하고 상업금융기관의 농업정책금융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은행 등 상업금융기관의 농업정책금융 취급은 농업정책금융의 취급 비용 인하, 농업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질의 향상, 농업금융시장의 경쟁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하지만, 상업금융기관의 농업금융시장 참여는 농촌지역금융시장에서 농협의 입지축소, 농업금융시장의 불안전성으로 인한 금융중개비용의 상승 등을 초래할 수도 있음.
 - 수익성 위주로 경영되는 상업금융기관들은 경쟁우위를 활용하여 신용도가 높은 우수 기업농에 대한 거액대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 농협은 수익성이 높은 우수고객을 상실하고 신용도가 낮은 농업인과의 거래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부실대출위험과 관리비용의 증가로 금융중개비용 상승이 유발될 수 있음.
- 따라서 은행 등 상업금융기관의 농업정책금융 참여는 농업정책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고 금융시장 측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업정책자금은 과다하게 세분화되어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어려우므로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구개방과 함께 유사한 성격의 자금 및 사업들은 통합하여 농업정책금융 체계를 보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업정책자금의 금리체계를 단순화하고 농업정책금융의 시장기능을 보다 활성화하여 차입자의 신용도와 대출기간 등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고 대출금융기관이 대출관련 위험을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업정책금융의 자금 및 사업의 통합방향은 기본적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기시설자금은 기존의 정부자금에 의존하되 단기운영자금은 금융기관이 대출에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임.

-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의 확대를 위해서는 취급금융기관 선정, 취급금융기관간의 업무차별화, 농업정책자금의 개방 우선순위, 취급수수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가.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의 선정

- 농업정책금융의 취급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2가지 방안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 1안 : 농림부는 매해 전국 규모의 점포망을 갖춘 은행 등 금융기관 중에서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을 선정

제 2안 : 농림부는 매해 전국 규모의 점포망을 갖춘 은행 등 금융기관과 지방은행 중에서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을 선정

< 검토의견 >

- 농업정책금융은 전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므로 일정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보다는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취급금융기관 확대가 적절함.
*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을 이미 확대한 프랑스의 경우, 전국 규모의 금융기관으로 취급금융기관을 제한하고 있음.
- 농업정책자금의 개방 초기에는 건당 취급액이 거액인 자금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취급금융기관의 책임 하에 주로 은행의 기존 고객인 농업관련사업체를 중심으로 추진된다면 신용분석능력 면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대형은행의 참여가 보다 바람직함.
- 또한 개방 초기에 취급금융기관을 과도하게 확대하면 전산운영비 등 관리측면에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며 금융기관당 취급금

액이 적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해되어 소기의 개방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설립 직후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문제로 인하여 모기지론 취급금융기관을 9개로 제한하고, 이후 개별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개발 등에 따라 취급금융기관 수를 8월 6일 이후 21개로 확대하였음. (<부록 1> 참조)

- 지방은행은 전국 규모의 대형은행에 비해 시군지역의 점포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개방 초기에는 지방소재 농업인보다는 농업정책자금을 대규모로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이 우선적으로 개방된다면 지방은행에 대한 개방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전국 규모 은행의 시군 및 읍면지역 점포수는 각각 평균 155개 및 24개로 지방은행의 동 지역 점포수 36개 및 11개에 비해 많아 지방은행에 대한 개방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표 IV-1>

은행 지점 분포
(2003년말 현재)

(단위: 개)

은행 구분	시군 지역	읍면 지역	전체 지점 수
국민	330	61	1,128
우리	186	31	692
하나	136	15	575
조흥	195	32	571
제일	123	18	410
신한	99	8	354
외환	94	18	320
한미	73	5	222
시중은행 계	1,236	188	4,272
부산	9	5	209
대구	25	12	186
경남	74	18	130
광주	19	16	115
전북	61	8	70
제주	25	5	32
지방은행 계	213	64	742
기업	130	14	390
산업	18	0	36
농협	363	212	880
수협	25	0	98
특수은행 계	536	226	1,404
합 계	1,985	478	6,418

— 따라서 농업정책금융의 취급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농림부가 전국 규모의 영업망을 갖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매해 선정하는 제1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농특회계 관리기관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과 선정된 금융기관간의 계약에 의해 농업정책금융 취급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으로서 지방은행의 선정은 제한적인 개방에 따른 효과를 검토한 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기준은 최대한 객관성을 높게 유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기관 일반사항, 농업정책금융의 전문성, 농업정책금융 수요자의 편의성, 정부예산의 절약 가능성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개별 금융기관이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점수에 의해 취급금융기관을 선정함.

- 항목별 점수는 금융기관 일반사항(20점), 농업정책금융 전문성(25점), 정책금융 수요자의 편의성(25점), 정부예산의 절약 가능성(30점) 등으로 배분하고, 각 항목별로 세부항목을 정하고 세부항목은 수, 우, 미 등 3단계로 평가하며 세부항목별 평가점수는 수(100%), 우(90%), 미(70%)로 정함.

- 금융기관 일반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10점)과 농업정책금융 취급의지 및 공익목적의 사업수행 경험(10점)에 의해 평가함.
 -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11%이상(수), 9% 이상 11% 미만(우), 9% 미만(미)로 함.
 - 농업정책금융 취급의지 및 공익목적의 사업수행 경험은 주로 주관적인 세부항목으로 금융기관이 제출한 대출계획서 등 자료에 입각하여 신청 금융기관의 향후 농업정책금융 취급계획에 의해 평가함.

- 농업정책금융 전문성은 농업정책금융 취급실적(15점)과 여타 정책금융 취급실적(10점)에 의해 평가함.
 - 농업정책금융 취급실적은 과거 3년간 신규대출실적이 3,000억원 이상(수), 3,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우), 1,000억원 미만(미)로 평가
 - 여타 정책금융 취급실적은 과거 3년간 7개 부처이상 정책자금 공급(수), 5개 부처이상 정책자금 공급(우), 5개 부처 미만 정책자금 공급(미)로 평가

- 정책금융 수요자의 편의성은 정책금융의 실질적 수혜자인 농업인의 편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농촌지역 점포수(15점)와 농업대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10점)에 의해 평가함.
 - 농촌지역 점포수는 시군지역 157개 중 90개 이상 지역에 지점설치(수), 70개 이상 90개 미만(우), 70개 미만(미)로 평가
 - 농업대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농업인 대출을 위한 여신관련규정의 정비,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등 농업대출을 위한 심사능력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 * 농업대출을 위한 심사능력의 적정성은 농업관련 전문심사인력 확보와 농업관련 심사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시설 등에 의해 평가

- 정부예산의 절약 가능성은 이차보전 기준금리 산정을 위한 신청 금융기관 대출의 과거 3년간 평균금리(10점), 이차보전 적용금리 산정을 위한 가산금리(10점), 취급수수료율의 적정성(10점) 등에 의해 평가함.
 - 이차보전 기준금리 산정을 위한 신청 금융기관 대출의 과거 3년간 평균금리는 가계신용대출(5점)과 가계담보대출(5점)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한 금융기관간 비교에 의해 상대평가하며, 평균금리의 최저 20% 미만(수), 최저 20% 이상 80% 미만(우), 최저 80% 이상(미)로 평가
 - 이차보전 적용금리 산정을 위한 가산금리는 취급금융기관간 상대평가로서 신용대출(5점)과 담보대출(5점)로 구분하여 가산금리의 최저 20% 미만(수), 최저 20% 이상 80% 미만(우), 최저 80% 이상(미)로 평가
 - 취급수수료율의 적정성은 개별 금융기관이 제시한 취급수수료율에 의해 평가하되 취급수수료율 상한인 1.5%(미), 1.4% 이상 1.5% 미만(우), 1.4% 미만(수)로 평가

-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은 취급금융기관 선정기준에 의한 평가에 의해 우수금융기관과 일반금융기관으로 구분하고 이들 금융기

관간의 농업정책금융 취급업무와 취급한도 등에 차이를 둬으로써 취급금융기관간 경쟁을 유도하고 농업정책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함.

○ 우수금융기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농업정책금융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금융기관의 농업정책금융 취급범위와 취급한도는 별도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해 제한함.

* 일반금융기관의 취급한도는 일반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한도만을 설정하여 취급금융기관간 경쟁을 유도하되, 전체 취급한도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함.

○ 취급금융기관의 농신보 위탁보증업무도 우수금융기관과 일반금융기관간 위탁보증한도 등에 차이를 둬.

□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이 확대되는 기간 중에는 농협중앙회와 회원농협을 우수금융기관으로 인정하되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 확대가 정착된 이후에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취급금융기관간 경쟁을 통한 농업정책금융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함.

□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 중 일반금융기관의 농업정책금융 취급범위는 개방되는 자금별로 정하고 취급한도는 개방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한하나 농업정책금융이 전반적으로 개방된 이후에는 농업대출실적과 농업대출에 관한 심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급범위와 취급한도를 정함.

나. 농업정책자금의 개방 순서

□ 농업정책자금의 개방 순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① 농업정책자금 개방의 목적
- ② 자금의 용도 및 대출기간
- ③ 자금의 대출평균금액
- ④ 농업인의 수요
- ⑤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손실위험 부담

- 농업정책자금 개방은 정책자금 재원을 확대함으로써 조달금리를 최소화하여 정부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의 자금조달 편의를 극대화하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농업정책자금 지원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금 및 사업을 우선 개방하기 위해 신규 취급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산업체에 대한 자금부터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전업농(농업경영체 포함) 및 신규진입농 등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확대
 -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자금은 대출부실 가능성이 높아 취급금융기관이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직접 부담한다면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자금 개방의 실질적인 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
 - * 농업정책금융의 지원대상은 전업농(농업경영체 포함), 신규진입농, 영세소농, 농업관련 산업체, 부실농(부실농업인 및 부실경영체) 등으로 분류
- 농업정책자금의 단계적인 개방방안으로는 다음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제 1안 :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자금을 우선 개방하고, 2~3년 후에 전업농 및 신규진입농에 대한 지원자금을 개방하고, 4~5년 후에 모든 농업정책자금을 개방

제 2안 :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자금을 우선 개방하고, 2~3년 후에 모든 농업정책자금을 개방

< 검토의견 >

— 농업정책자금 개방효과를 초기에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개방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개방효과가 큰 자금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따라서 제 1안과 제 2안의 개방효과를 비교해 보면 보다 보수적인 제 1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농업정책자금 개방의 우선순위는 개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금의 용도 및 대출기간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제 1안 : 장기시설자금의 우선개방

제 2안 : 단기운영자금의 우선개방

< 검토의견 >

— 농업정책자금 개방이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장기시설자금의 우선개방이 적절하고, 농업정책자금 개방이 농업인의 자금조달 편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기운영자금의 우선개방이 적절함.

— 금융기관이 단기간 내에 장기 농업정책자금 지원에 필요한 심사능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금융기관들이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관한 신용위험을 부담할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큰 장기대출보다는 단기대출을 선호할 것이므로 개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운영자금의 우선개방이 적절함.

—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단기운영자금을 우선 개방하는 제 2안이 적절시되나, 정책 목표를 감안하여 장기시설자금의 개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상업금융기관은 수익성 위주로 경영되고 있으므로 개별 대출별로

수익성을 판단할 때, 대출 평균금액이 큰 자금을 선호할 것이므로
 창구개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출 평균금액이 큰 자금의
 우선개방이 적절시됨.

- 농업정책자금의 실질적 수혜자인 농업인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정책
 자금 개방수요가 많은 자금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농업정책자금 개방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면, 농업정책자금의 개방은 농업 및
 축산 관련 사업체에 대한 지원자금, 단기운영자금, 대출평균금액이
 큰 자금, 농업인의 개방수요가 많은 자금 등의 요건을 갖춘 자금부
 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점진적으로 개방대상 자금을 확대하는 것
 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03년말 현재 대출건수 100건 이상, 평균대출
 금액 1억원 이상인 단기운영자금을 우선개방자금으로 선정하면 미
 곡종합처리장, 농산물포장센터, 가축계열화, 브랜드육 육성(축산물판
 매시설 현대화), 축산업협동조합 육성(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
 업) 등의 자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자금별 대출건수, 대출금액, 평균대출금액 등은 <부록 2> 참조
 - 구체적인 개방방안의 예시는 <부록 3> 참조

<표Ⅳ-2> 우선개방 대상 자금 대출현황

(단위: 백만원, 건)

	사업종류	대출건수	대출잔액	평균 대출금액
농특회계	미곡종합처리장	534	343,537	643
농어촌	농산물 포장센터	328	36,631	112
구조개선	미곡종합처리장	1,356	357,748	264
축산발전 기금	가축계열화	555	70,079	126
	브랜드육 육성	208	28,207	136
	축산업 협동조합 육성	161	254,535	1,581

주: 1. 대출건수 및 대출잔액은 2003년 12월말 현재
 2. 최근에 “브랜드육 육성”은 “축산물 판매시설 현대화”, “축산업 협동조합
 육성”은 “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변경됨.

자료: 농협중앙회

- 하지만, 농업인의 수요를 중심으로 대출건수가 많은 자금을 중심으로 우선개방자금을 선정하면 대출건수가 10만건을 초과하는 일반 및 전문 농업경영자금, 농업기계화자금 등이 해당됨.
 - 하지만, 이들 자금의 대출금액 평균은 500만원 이하인 소액으로 수익성이 낮아 은행 등 신규취급금융기관의 취급회피가 우려됨.
 - 따라서 소액자금의 우선개방을 위해서는 소액자금 취급에 관한 조항을 취급금융기관과의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다. 취급수수료

- 농업정책금융 취급수수료는 정부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취급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농업정책대출과 관련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취급금융기관별로 업무규모와 업무효율성 등에 따라 취급원가가 상이하므로 취급금융기관이 확대된 이후에 모든 취급금융기관들에게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취급수수료 산정은 불가능함.
- 따라서 취급금융기관간 경쟁을 통해 취급수수료를 책정함으로써 취급수수료 결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부담을 최소화하며 농업정책금융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즉, 매해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에 취급수수료율을 명시함으로써 금융기관간 경쟁을 유도하고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 현재 농업정책금융과 관련하여 정부는 대출취급수수료 1.5%(대손보전공제금 0.5% 포함)를 지불하고 있는바, 대손보전공제금은 대출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농업대출의 신용위험과 관련된 보상의 성격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취급수수료는 1.0%로 판단되며 이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농업정책대출은 소액거래 건수가 많아 관리비용이 기타 정책대출에 비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프랑스의 농업정책금융에서는 신용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금리 0.4%~0.5%, 관리수수료 0.8%가 지불되고 있음.
- 농업정책금융의 대출취급수수료는 1.5%로서 정부의 타 부서의 기금 및 회계자금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농업정책금융은 소액대출이 많아 수수료율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상황임.
 - 산자부 전력사업기반기금의 대출취급수수료는 대규모사업 0.6% 내외, 소액사업 1.5%이며, 산업기반자금의 대출취급수수료는 1.0%
 - 산자부 유전개발탐사의 대출취급수수료는 0%이지만 가스안전관리사업의 수수료는 4.0%로 매우 높은 수준

<표 IV-3> 정책금융의 대출취급수수료 및 대손보전공제금 현황

(단위: %)

회계 및 기금	소 관	대출취급 수수료(A)	대손보전 공제금(B)	합계(A+B)	비고
축발기금	농림부	1.0	0.5	1.5	
농특회계	농림부	1.5	(0.5)	1.5	
농안기금	농림부	2.0	(0.5)	2.0	농협 취급분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자부	0.6~1.5	-	0.6~1.5	소액사업 1.5%, 대규모 0.6% 내외
산업기반자금	산자부	1.0	-	1.0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산자부	0~4.0	-	0~4.0	유전개발탐사 0%, 가스안전관리사업 4.0%

주: ()내는 지급된 대출취급수수료에서 대손보전공제금을 납부하는 경우
 자료: 농림부

- 농협중앙회가 분석한 원가계산에 의하면, 대출취급수수료는 농업정책대출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보상하고 있으나 농협이 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은 충분히 보상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농협중앙회 용역에 의한 정책대출 차입금 관련 2001년 손익분석에 의하면 취급수수료율은 1.11%로 자금원가 및 업무원가의 비율 0.91%를 차감하면 0.20%의 마진이 발생하나, 적정마진인 기회비용 0.99%를 보상하지는 못하고 있음.
 - 하지만, 기회비용은 업무취급에 대한 보상으로서 금융기관별로 상이하며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따라 취급원가도 절감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개별 금융기관별로 농업정책대출과 관련된 객관적인 업무취급원가의 추정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취급금융기관이 농업정책대출과 관련된 신용위험을 전액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정부자금을 이용하여 농업정책대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현 대출취급수수료 1.5%를 상한으로 하여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이 제시한 취급수수료율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됨.
- 농업정책대출 취급금융기관이 농업인 대출에 대하여 대손보전기금에 의한 신용보전을 요구할 경우에, 정부는 대출취급수수료에서 대손보전공제금(현재 0.5%)을 차감한 수수료를 지불
- 또한 대출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초년도에 많이 발생하나 2차년도 이후에는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기간 경과에 따라 대출취급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농업정책자금 관리방법 개선

- 현재 농업정책금융은 주로 농협중앙회를 통해 집행 및 관리되고 농업정책자금의 재원공급기능, 자금집행기능, 관리기능 등이 농협중앙회에 집중되므로 이러한 기능의 분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농업정책금융은 자금 및 사업종류가 다양하여 관리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는바, 취급금융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책

자금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취급금융기관이 확대된 후에도 농업정책금융은 기존의 농협 중심의 운영형태를 유지할 것이나, 농협이 다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관리업무의 독립성 유지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개별 금융기관이 별도로 관리하는 것도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됨.
- 농업정책자금을 농업인에게 대출하는 농협 및 상업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운용과 경쟁을 통한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농업정책자금의 공급 및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함.
- 또한 취급금융기관 확대에 따라 이차보전 대상 금융기관이 증가하면 취급금융기관별로 이차보전을 위한 기준금리 산정 및 보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독립된 기관에 의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기준금리의 책정과 관리가 필요함.
- 따라서 농협 및 상업금융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기능을 확대 보완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종합적인 공급 및 관리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04년에 설립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관련 규정에 의해 농특회계 대여금의 운용·관리 및 사후관리와 농림수산정책자금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이 확대된 이후 농업정책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림부는 농업정책금융과 관련된 자금(농업정책융자금, 취급수수료, 이차보전자금 등)을 공여하고,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농업정책금융의 집행,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됨.

- 향후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농업정책금융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감독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시되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 선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선정과정을 관리하고, 선정된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수행
 - ② 이차보전과 관련된 업무로서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을 위한 기준금리 산정, 이차보전금액 지급 등 제반 관리업무를 수행
 - ③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취급수수료 지급 등 관리업무를 수행
 - ④ 농업정책금융과 관련된 각종 기금의 관리
 - ⑤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의 농업정책자금 집행, 관리 등에 관한 검사 및 감독

- 또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대출 및 사후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대출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금융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부실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함.

3. 농업정책자금 재원 확대 및 이차보전제도 개선

- 농업정책금융의 재원은 정부자금(재특회계자금, 농특회계자금, 각종 기금 등)과 농협자금(농협중앙회자금, 상호금융특별회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취급금융기관 확대에 따라 관련 금융기관의 자금이 활용되어 농업정책금융의 재원이 증가되는 효과가 기대됨.
 - 그러나 금융기관별로 담보취득 등 대출정책과 대출금리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음.

- 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예치금에 비해 대출수요가 적어 여유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취급금융기관 확대에 따라 양

적인 측면에서 농업정책대출을 위한 자금의 추가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최근에 시중은행의 예금감소와 대출증가로 총예수금 대비 총대출금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저금리 기조의 정착으로 은행의 자금여유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표 IV-4>

은행의 예수금 및 대출금

(단위: 억원, %)

년 도	시중은행			지방은행		
	총예수금(A)	총대출금(B)	B/A	총예수금(A)	총대출금(B)	B/A
1996	1,254,241	928,138	74.0	271,811	195,704	72.0
1997	1,620,506	1,246,169	76.9	271,933	215,915	79.4
1998	2,049,491	1,285,031	62.7	259,215	152,937	59.0
1999	2,590,635	1,652,825	63.8	300,010	172,806	57.6
2000	3,174,346	2,117,289	66.7	329,517	193,097	58.6
2001	3,554,307	2,477,352	69.7	370,615	216,810	58.5
2002	4,237,726	3,280,000	77.4	415,304	278,669	67.1
2003	4,648,562	3,714,201	79.9	457,164	317,272	69.4
2004	4,617,173	3,841,488	83.2	451,997	326,794	72.3

주: 1) 2003년까지는 연말 현재, 2004년은 5월말 현재

2) 총예수금은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CD, 금융채 등을 포함

- 농협의 회원조합도 여유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저금리 추세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호금융특별회계자금을 농업정책금융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금의 양적인 추가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됨.

-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자금조달은 예수금 증가에 힘입어 2002년 12월 36조 1,676억원에서 2004년 6월 39조 1,253억원으로 증가

- 현재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조달된 자금은 주로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되어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농업정책금융에 투입할 필요가 있음.

-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조달된 자금의 유가증권투자 비중은 2002년 12월말 78%에서 2004년 6월말 70%로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조성된 자금이 주로 유가증권투자에 운용되고 있음.

<표 IV-5> 상호금융특별회계 조달 및 운용

(단위: 억원)

구 분		2002. 12	2003. 12	2004. 6
조달	예수금	346,089	341,689	367,491
	기타	15,587	19,036	23,762
	조달 계	361,676	360,725	391,253
운용	유가증권 (채권)	282,310 (255,013)	273,836 (248,103)	274,341 (251,726)
	대출금	16,143	16,558	45,785
	기타	345,533	344,167	345,468
	운용 계	361,676	360,725	391,253

- 하지만, 농업관련 대출은 상업금융기관의 일반대출에 비해 신용위험이 크므로 취급금융기관별로 사업별 특성 등을 감안한 대출정책의 차이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취급에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비한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상업금융기관의 소액대출기피, 신용위험이 높은 농업인에 대한 대출기피 등으로 인해 농업인의 대출수요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는 신용경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취급금융기관 확대 이후에 개별 금융기관의 대출정책 등으로 인한 신용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취급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대출계획서나 농업정책자금관리단과의 계약서에 소액대출, 신용도가 낮은 농업인에 대한 대출 등에 관한 대출확대방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의 자금이 농업정책금융에 투입될 경우에는 농업정책금융 대출금리가 취급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 비해 낮으므로 취급금융기관에 대한 이차차액보전(이차보전)과 이를 위한

기준금리의 결정이 필요함.

- 현재 농협자금이 농업정책자금으로 사용될 경우에 이차보전을 위한 기준금리는 대출금잔액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하고 이차보전은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 자금이 사용되는 경우와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자금이 사용되는 경우에 기준금리가 다르게 책정되고 있음.
 - 2003년의 농협중앙회 자금의 기준금리는 6.21%, 회원조합 상호금융자금의 기준금리는 7.88%로 회원조합 상호금융자금의 기준금리가 농협중앙회 자문에 비해 1.67% 높았음.
- 또한 은행 등 상업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동일 금융기관에서도 차입자의 종류(기업, 개인 등), 차입자의 신용도, 대출기간, 담보여부 등에 따라 상이한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있음.

<표 IV-6>

대출금리 현황¹⁾

(단위: %)

구 분		신용등급			비고	
		최상위 등급	최다차주 해당등급	최하위 등급		
개인	신용	등급	A	D	H	고정금리
		금리	8.75	10.25	12.25	
	아파트담보	금리	7.8			고정금리
	예금담보	금리	5.24			담보예금+1.5%
기업	기업일반 ²⁾	등급	1	6	6	
		금리	5.31	7.84	7.84	

주: 1) 신한은행, 만기 1년 기준

2) 무담보대출 기준

자료: 신한은행, 2004년 1/4분기 리포트

-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이 확대되고 취급금융기관별로 기준금리를 산정한다면 취급금융기관별로 대출금리가 상이하므로 기준금리 산정을 위한 대출금리 선택의 문제와 산정된 기준금리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

- 금융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상이한 기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에 기준금리에 차이가 큰 경우, 기준금리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는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취급금융기관별 대출금리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모든 취급금융기관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금리를 책정함으로써 취급금융기관간 경쟁을 통한 기준금리의 인하를 유도하고 농업정책금융 운용비용의 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기준금리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구분하여 책정함으로써 차입자의 신용도 등 대출특성에 따른 차이를 기준금리에 반영함.
- 이차보전을 위한 기준금리의 산정방법, 추가금리, 적용금리 등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구분하여 매해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취급금융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농업정책금융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앴.
 - 현재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차입자의 신용상태, 담보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기준금리 산정 시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정부가 지급하는 이차보전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농업정책금융이 주로 농업인(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이차보전을 위한 농업정책신용대출과 농업정책담보대출의 분기별 기준금리는 원칙적으로 각각 모든 취급금융기관의 지난 분기의 개인신용대출금리와 개인담보대출금리의 대출금액 가중 평균치로 정하고, 매해 농업정책자금관리단과 취급금융기관간 계약서에 명시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별 추가금리를 기준금리에 가감하여 이차보전을 위한 적용금리로 정하고, 이차보전 대상 대출금액에 적용금리에서 농업정책금융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곱함으로써 이차보전액을 산정함.
 - 하지만, 개방 초기에 기업대출 위주로 개방이 추진될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기업신용대출금리와 기업담보대출금리를 대상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4. 신용보증제도 개선

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신용도가 낮은 농업인의 농업정책자금 이용을 위한 신용보강과 대출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설립된 농신보는 그 동안 누적된 대위변제로 정부의 막대한 출연금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기금이 급속도로 감소하여 그 기능이 위축되고 있음.
- 2004년 4월말 현재 농신보의 기본재산은 9,500억원으로 보증잔액 19조원의 법규상 운용배수 20배를 간신히 충족하여 기본재산의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농신보의 총당금 조정전 기본재산은 7,782억원에 불과하여 실제 운용배수는 24.4배로 기본재산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

<표Ⅳ-7> 최근 5년간 농신보 수지상황

(단위 : 억원, 배)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보증잔액(A)	94,184	144,615	186,066	193,889	191,004
순증	26,275	50,431	41,451	7,823	Δ2,885
기본재산(B=a+b+c)	5,778	9,048	11,508	11,438	9,550
전년이월(a)	6,375	5,778	9,048	11,508	11,438
출연금(b)	1,220	4,451	3,968	2,789	1,321
정 부	1,061	4,260	3,765	2,562	1,000
금융기관	159	191	203	227	321
당기순이익(c)	-1,817	-1,181	-1,508	-2,859	-3,209
수입	1,000	1,352	1,508	1,451	1,252
보증료	181	296	359	419	423
자산운용수입(이자 등)	813	1,024	1,103	953	695
기타	6	32	46	79	134
지출	2,817	2,533	3,016	4,310	4,461
대위변제준비비	615	199	226	Δ238	618
구상채권상각비	1,840	1,990	2,293	4,099	3,159
(대위변제)	(1,202)	(2,190)	(2,695)	(4,533)	(5,719)
지급수수료	50	99	106	123	120
관리업무비 등(법인세)	312	245	391	326	564
운용배수(A/B)	16.3	16.0	16.2	17.0	20.0

주: 2003년도 운용한도 20배 초과로 1,761억원의 구상채권상각비를 2004년으로 이월
 자료: 농협중앙회

- 2004년 농어가부채대책으로 농업정책금융의 원금상환이 연기되어 단기적으로 급격한 대손증가는 방지되었으나, 지원대상인 중장기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과 상호금융대체자금 추가지원을 위한 농신보의 보증한도 확대 및 신용조사 완화가 요구되어 장기적으로는 대위변제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경기악화로 보증규모가 확대되고 대손판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소득증가 등 농가의 경제상황 호전도 예상되지 않아 대손지급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됨.
 - 특히, 특례보증 등에서 발생한 대위변제 증가로 기금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신규보증, 대위변제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농업정책금융의 연체율이 일반은행의 대출에 비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신보의 보증료율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농신보의 적자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향후에도 불가피하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농업정책자금의 연체율은 6.03%(2004. 2월말)로 은행의 무수익여신비율 2.2%(2003년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농신보의 보증율은 0.3%~1.2%로 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료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대손판정비율이 높은 5,000만원 이하의 보증료율이 0.3%로 농신보가 부담하는 신용위험에 비해 보증료율은 매우 낮은 상황임.

<표 IV-8>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료율

(단위: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농신보
중소기업: 0.5~2.0 대기업: 1.2~2.0	중소기업: 0.5~2.0 대기업: 1.2~2.0	개인: 0.4~0.9 사업자: 0.5~1.0	개인: 0.3~0.9 법인: 0.5~1.2

자료: 농협중앙회

- 보증잔액 대비 일반보증 대위변제 비율은 2003년말 3.1%로 매우 높아 농신보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는 높은 부실비율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증료율을 높이거나 부실가능성이 높은 보증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표Ⅳ-9> 최근 2년간 일반보증 대위변제 비율

(단위: 억원,%)

구 분	보증잔액 (A)	대위변제 (B)	대위변제 비율 (B/A)
2002년말	89,861	2,330	2.6
2003년말	89,395	2,731	3.1

자료: 농협중앙회

- 농신보가 직접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직접보증의 대손판정 비중은 36.4%이나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서를 위탁 발급하는 위탁보증의 대손판정 비중은 63.6%로 위탁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이 확대되면 취급금융기관간 경쟁으로 인하여 위탁보증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실 위탁보증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농업정책자금 중에서 농업인의 소득보전 성격이 강한 자금에 대한 보증료율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정부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신용경색을 방지하고, 사업지원 성격이 강한 자금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시장기능에 맞게 상향 조정하며 대출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해 위탁보증한도를 축소하고 부분보증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손판정 비중이 21.7%로 매우 높은 농신보의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위탁보증에 대한 부분보증제도의 도입이나 위탁보증한도의 축소 등이 필요
 - 부분보증제도의 대출금융기관 부담을 현행 10%에서 20%~30%로

확대함으로써 농신보의 부담을 경감하고 대출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축소

* 그러나 부분보증한도를 확대함에 따라 취급금융기관이 농업정책금융 취급을 기피하여 농업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부분보증한도 확대는 신중한 처리가 요망됨.

- 농신보의 보증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축산 경영자금 등 영농자금대출을 보증하고 정부가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이차보전을 하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대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대출자선정기관이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대출자선정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절차상 문제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

나. 대손보전기금

- 대손보전기금 잔액은 2002년말 952억원에서 2003년말 710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대손보전 증가로 2006년에는 기금잔액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손보전기금의 대손보전기능이 위축되고 있음.

<표 IV-10> 대손보전기금 현황 및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기금조성액	394	360	382	380	387
기금운용액	416	602	670	670	519
(대손보전액)	(403)	(587)	(650)	(650)	(499)
기금잔액	952	710	422	132	0

자료: 농협중앙회

- 따라서 대손보전기금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대손보전기금 확대, 보전대상 축소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며,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자금 및 기금출연자금의 일치, 부분보전제도의 확대, 대손보전한도의 제한, 대손보전공제금 인상 등이 시급한 상황임.
 - 장기적으로는 대손보전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대출 부실 증가에 대비하여 정부출연금을 확보하거나 농신보와 통합 등 조직변경을 모색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사업이 기금출연대상사업에 비해 광범위하여 보전대상사업 규모가 기금출연사업 규모보다 크므로 보전대상사업을 축소하거나 기금출연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함.
 -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사업은 농특회계융자금, 농안기금융자금, 농축산경영자금, 각종 부채대책자금, 기타 정책자금 등으로 광범위하나, 대손보전기금 출연자금은 농특회계융자금 및 농안기금융자금으로 제한되고 있음.
 - 2003년 보전대상사업의 규모는 9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보전기금출연 대상자금은 6조원에 불과하여 보전대상과 기금출연대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대손보전기금의 대손보전대상사업 축소는 농업정책금융의 축소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기금출연을 모든 대손보전대상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기금출연을 면제하고 있는 농축산경영자금과 부채대책자금에 대한 기금출연은 관련 금융기관(특히, 농협 회원조합)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됨.
 - 따라서 정부가 농업정책자금 취급수수료 지급 및 이차보전 시에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대손보전기금의 대손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손보전사업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거액대출을 중심으로 부분대손보전을 우선 시행하며, 점진적으로 부분대손보전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함.
 - 부분대손보전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농업정책금융 취

급금융기관의 대출기피로 농업인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3,000만원을 초과하는 농업정책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부분대손보전제도를 시행하되 현행의 부분보전비율(90%)은 유지함.

- 동일인에 대한 대손보전한도가 제한되지 않아 2002년에 1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출,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대출 등 고액 농업정책대출로 인한 대손보전기금의 거액손실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동일인당 대손보전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농신보의 경우에 보증한도가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등으로 제한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일인당 대손보전한도는 신규대출에 대하여 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표Ⅳ-11> 2002년 동일인에 대한 금액별 대손보전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개 인		법 인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억원 초과	0	0	4	59	4	59
5~10억원 이하	2	15	5	39	7	54
3~5억원 이하	1	4	11	42	12	46
1~3억원 이하	29	45	31	57	60	102

- 대손보전공제금 비율은 0.5%로 대손보전비율에 비해 매우 낮아 대손보전기금 감소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대손보전공제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농업정책금융이 농협 중심으로 운영되어 농협이 대손보전기금의 운영을 맡고 있으나,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 확대에 따라 장기적으로 대손보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대손보전기금과 농신보의 통합 등 조직개편이 필요함.
 - 대손보전기금의 대손보전업무는 농신보의 보증업무와 동일한 업무이므로 대손보전기금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보다는 대손보전기금과 농신보의 통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부록 1 >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취급금융기관 선정

- 취급 금융기관은 2004. 8. 16 이후 시중은행 11개, 지방은행 6개, 보험사 4개 등 21개 금융기관임.
 - 시중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외환, 우리, 제일, 조흥, 하나, 한미 등 11개
 - 지방은행은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등 6개
 - 보험사는 대한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LG화재 등 4개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론 판매와 관련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2차에 걸쳐 취급금융기관을 선정함.
 - 1차 취급 금융기관 선정(2004. 3. 24)은 다음 절차에 의함.
 - * 공사법상 모기지론 취급이 가능한 모든 기관(3001개)에 대해 모기지론 취급의향서 제출요청
 - * 의향서를 제출한 93개 금융기관 중 채권관리 수수료 수용여부 등을 고려해 12개 우선 협상기관 선정
 - * 전산시스템 개발 등 3월 25일 모기지론 출시에 필요한 업무준비가 완료된 9개 금융기관(은행 7, 생보사 2) 선정

 - 2차 취급 금융기관 선정(2004. 8. 6)은 다음 절차에 의함.
 - * 미취급 금융기관에 취급의향서 제출을 요청하여 의향서를 제출한 19개 금융기관 중 채권관리 수수료 및 대출양도 확약 규모 등의 요건을 충족한 13개 우선 협상기관 선정
 - * 전산시스템 개발 등 모기지론 출시에 필요한 업무준비가 완료된 12개 금융기관(은행 10, 손해보험사 2) 선정

- 공사 모기지론 미취급 금융기관의 참여 요청을 수렴하고 국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취급기관 확대를 추진함.
 - 우선 협상기관은 시중은행 4개, 지방은행 6개, 손해보험사 2개, 캐피탈사 1개 등 13개임.
 - 시중은행은 신한, 조흥, 한미은행, 수협중앙회 등

- 지방은행은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LG화재 등
 - 캐피탈사는 롯데캐피탈
- 약 1개월간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대출양수도 확약, 전산개발 등 세무사항을 합의한 결과 롯데캐피탈을 제외한 12개 기관을 선정
- 취급기관 확대에 따라 모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모기지론을 취급할 수 있게 됨.
- 수도권에 비해 주택수요가 적고 주택가격이 크게 낮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방은행은 대출양수도 확약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전부 선정함.
 - 보험권에서는 현행 2개 생명보험사 이외에 2개의 손해보험사가 추가로 참여하여 총 4개사가 모기지론을 취급할 수 있게 됨.
- 공사는 향후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 소형 저축기관의 모기지론 취급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단계적으로 취급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부록 2 >

농업정책자금 대출현황(농협중앙회)
(2003. 12. 31 기준)

(단위: 백만원, 건)

계 정 명	계 정 과 목	대출건수 (A)	대출잔액 (B)	평균대출금액 (C=B/A)
상호금융단기농사대출금	원예작물자금(329)	-	-	0
상호금융단기농사대출금	축산경영자금(343)	-	-	0
상호금융단기농사대출금	일반농업경영자금(344)	38,707	140,161	4
상호금융단기농사대출금	재해대책(377)	-	-	0
상호금융단기농사대출금	전문농업경영자금(392)	10	25	3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1215대체지원자금(3)	1,818	9,979	5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14.0%이차보상(5)	847	724	1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2000농가부채대책(6)	76,696	1,849,034	24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8.5%이차보상(14)	98	89	1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9.0%이차보상(15)	78	69	1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과수낙과및인삼침수피해(54)	152	2,668	18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농업종합자금(원예특작)(158)	4,278	73,098	17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농업종합자금(인삼)(159)	452	3,696	8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농업종합자금(축산)(160)	9,065	228,656	25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농업종합자금(농기계)(582)	1,424	33,125	23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농업종합자금(기타)(583)	9	390	43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상호금융대체자금(254)	2,390	28,400	12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양축가생활안정자금(309)	6	25	4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연체해소자금지원(314)	-	-	0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특별경영자금(487)	13	133	10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농업경영체회생자금(585)	-	-	0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2004부채대책(612)	-	-	0
저리대체자금대출금	2001상호금융대체(8)	789,104	6,728,513	9
저리대체자금대출금	연체해소자금지원(314)	184	2,930	16
저리대체자금대출금	영월댐피해농가대손보전자금 (320)	16	216	14
저리대체자금대출금	영월댐피해농가대체자금 (321)	413	3,340	8
저리대체자금대출금	정책자금대손보전자금(405)	5,719	40,074	7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연체해소자금지원(314)	-	-	0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특별경영자금(487)	13	133	10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농업경영체회생자금(585)	-	-	0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2004부채대책(612)	-	-	0

계 정 명	계 정 과 목	대출건수 (A)	대출잔액 (B)	평균대출금액 (C=B/A)
저리대체자금대출금	2004년상호금융대체(613)	-	-	0
저리대체자금대출금	2004연체해소자금(614)	-	-	0
대리대출금	국민투자기금(71)	216	66	0
단기농사자금대출금	객토(37)	6	25	4
단기농사자금대출금	기타농업경영자금(110)	4	18	5
단기농사자금대출금	농기업경영자금(132)	113	1,084	10
단기농사자금대출금	농업경영체(161)	4	59	15
단기농사자금대출금	원예작물자금(329)	30,105	147,025	5
단기농사자금대출금	일반농업경영자금(344)	142,117	502,562	4
단기농사자금대출금	재해대책(377)	380	1,180	3
단기농사자금대출금	전문농업경영자금(392)	35,594	143,229	4
단기농사자금대출금	진흥지역특별자금(438)	102	292	3
재정농사자금대출금	객토(37)	11	16	1
재정농사자금대출금	농기업경영자금(132)	1,582	6,877	4
재정농사자금대출금	농업종합자금(원예특 작)(158)	356	3,930	11
재정농사자금대출금	농업종합자금(인삼)(159)	28	132	5
재정농사자금대출금	농업경영체(161)	8	128	16
재정농사자금대출금	농업경영특별지원자금 (162)	9,073	24,365	3
재정농사자금대출금	원예작물자금(329)	11,754	47,651	4
재정농사자금대출금	일반농업경영자금(344)	253,026	930,396	4
재정농사자금대출금	재해대책(377)	17,443	41,634	2
재정농사자금대출금	전문농업경영자금(392)	161,642	655,388	4
재정농사자금대출금	진흥지역특별자금(438)	59	166	3
재정농사자금대출금	특별경영자금(487)	220	1,307	6
재정농사자금대출금	휴경논생산화자금(516)	3	4	1
기타재정운전자금대출금	농안기금(148)	11,326	188,647	17
재정축산경영자금대출금	농업종합자금 (원예특작)(158)	77	857	11
재정축산경영자금대출금	농업종합자금(축산)(160)	418	7,108	17
재정축산경영자금대출금	일반경영자금(343)	822	5,058	6
재정축산경영자금대출금	재해대책(377)	94	214	2
재정축산경영자금대출금	전업경영자금(394)	42	681	16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2000농가부채대책(6)	5,995	212,937	36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2001년농가부채대책(7)	301,170	1,522,878	5

계 정 명	계 정 과 목	대출건수 (A)	대출잔액 (B)	평균대출금액 (C=B/A)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98부채대책(17)	472	2,824	6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공동이용조직(46)	520	2,353	5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과수인삼재해지원(55)	19,073	54,586	3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귀농자창업지원(75)	1,632	6,780	4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기타(100)	7	7	1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농업종합자금 (원예특작)(158)	12,277	175,991	14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농업종합자금(인삼)(159)	7,175	54,534	8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농업종합자금(축산)(160)	10,471	221,980	21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농업기계화(164)	329,386	1,176,294	4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농업인저리지원(175)	1,682	5,300	3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농특사업(183)	4	5	1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미곡종합처리장(209)	534	343,537	643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벼직파재배지원(219)	82	154	2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부업축산(226)	330	931	3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부채경감(227)	4	2	1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새마을종합개발(259)	196	469	2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생산자조직(262)	40	288	7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소입식(279)	1	1	1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쌀전업농(304)	10,115	27,021	3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양축가생활안정자금(309)	1	-	0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연체해소자금지원(314)	-	-	0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자체재해지원(367)	82	358	4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재해복구(379)	43,027	213,822	5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지도사업개혁자금(426)	38	236	6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지역특산물개발(434)	1,684	8,878	5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첨단원예농업자금(445)	100	652	7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축산경영및재해자금(458)	2	6	3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특별경영자금(487)	600	4,682	8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농업종합자금 (농기계)(582)	1,046	23,576	23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농업종합자금(기타)(583)	5	423	85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농업경영체회생자금(585)	336	14,959	45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2004부채대책(612)	-	-	0
금융축산경영자금대출금	일반경영자금(343)	52,229	343,626	7
금융축산경영자금대출금	재해대책(377)	10	17	2
금융축산경영자금대출금	전업경영자금(394)	756	12,966	17
재정수리자금대출	농업기반조성(172)	8,746	216,238	25

계 정 명	계 정 과 목	대출건수 (A)	대출잔액 (B)	평균대출금액 (C=B/A)
재정농업중기대출금	98부채대책(17)	328	5,558	17
재정농업중기대출금	농공지구조성자금(131)	3	220	73
재정농업중기대출금	농안기금(148)	430	3,758	9
재정농업중기대출금	농업기계화(164)	16	25	2
재정농업중기대출금	농지조성(178)	8	97	12
재정농업중기대출금	영세농자립지원(318)	2	2	1
재정농업중기대출금	특별경영자금(487)	142	1,620	11
농지구입자금대출금	농지구입자금(176)	46,635	135,819	3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가공기계산업육성(25)	9	195	22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감자가공공장(32)	1	29	29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감자원종말실재배(33)	129	132	1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개랑곳간(34)	209	19	0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경지정리(40)	42	20	0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고구마전분가공공장(45)	-	-	0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공동이용조직(46)	648	3,117	5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공동퇴비제조장설치(47)	202	5,271	26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과실생산유통지원(56)	70,722	249,069	4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관광농원및휴양단지(58)	1,313	37,027	28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국민관광지개발(68)	1	-	0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귀농자창업지원(75)	2,079	9,801	5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기존하우스시설개선(99)	-	-	0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김치제조시설현대화(121)	-	-	0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농공단지조성(130)	19	5,790	305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농산물간이집하장(137)	357	2,229	6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농산물공판장건설(138)	48	8,629	180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농산물물류센터(139)	20	21,640	1,082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농산물물류표준화(140)	1,431	11,394	8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농산물유통시설보완(141)	3	545	182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농산물유통시설보완사업 (142)	31	2,381	77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농산물직거래지원(143)	21	2,947	140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농산물포장센터(145)	328	36,631	112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농어가공산품임가공(149)	1	5	5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농어민후계자육성(150)	72,965	1,013,102	14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농어촌지역종합개발(156)	8	7	1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농어촌특산단지(157)	1,404	16,033	11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농업종합자금 (원예특작)(158)	10,778	162,427	15

계 정 명	계 정 과 목	대출건수 (A)	대출잔액 (B)	평균대출금액 (C=B/A)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농업종합자금(인삼)(159)	7,175	54,534	8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금	농업종합자금(축산)(160)	10,471	221,980	21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농업종합자금(기타)(583)	4	89	22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농업종합자금 (농기계)(582)	313	8,317	27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농업기계화(164)	180,140	704,621	4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농지조성(178)	-	-	0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대과맥가공공장(189)	-	-	0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미곡종합처리장(209)	1,356	357,748	264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민간병원대환(212)	12	437	36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민간병원신설(214)	74	4,911	66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버섯(216)	145	286	2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버섯종균접종원(217)	3	706	235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벼직파재배지원(219)	66	105	2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산지유통시설(250)	18	37	2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산지일반가공(251)	218	19,812	91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새마을영농기술자지원 (258)	-	-	0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생산자조직(262)	109	499	5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생약(263)	153	291	2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선도농업경영체(268)	281	10,009	36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성장작목시범단지(270)	331	5,784	17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수리구조물생산(281)	-	-	0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쌀가공식품시설현대화 (303)	4	430	108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쌀전업농(304)	8,590	23,816	3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어린모공동육묘장(312)	2,080	399	0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엽연초(316)	22	14	1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읍면상하수도(339)	293	20,577	70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인공씨감자생산시설(340)	3	240	80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인삼생산유통지원(341)	970	3,954	4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임도정공장시설대체(353)	85	2,193	26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작목전환지원(369)	50	73	1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잡업(370)	693	572	1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재해대책(377)	8,175	18,864	2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저온유통기반확충지원 (385)	46	4,942	107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전업농육성(395)	15,218	333,514	22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전통식품(396)	764	26,042	34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정주생활권개발(404)	24,920	369,070	15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조합합병지원(410)	85	13,300	156

계 정 명	계 정 과 목	대출건수 (A)	대출잔액 (B)	평균대출금액 (C=B/A)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주거환경개선(416)	54,325	89,196	2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주민생활여건개선(417)	9	11	1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중소농고품질농산물(424)	2,358	19,381	8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지역종합개발(433)	188	398	2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지역특화시범사업(435)	8,450	76,740	9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채소생산유통지원(441)	29,980	194,423	6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철부선건조(444)	1	6	6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청과물종합유통시설(446)	7	58	8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축산경쟁력제고(462)	18,921	214,177	11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축산폐수처리시설(478)	42,079	193,510	5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토양개량(483)	3,805	4,766	1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특작생산유통지원(488)	9,782	55,454	6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화훼생산유통지원(512)	2,163	43,349	20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화훼수출계열화(513)	4	12,265	3,066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화훼생산(수출)단지조성 (574)	18	989	55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2004부채대책(612)	-	-	0
국민투자기금대출금	농업기계화(164)	103	67	1
국민투자기금대출금	국산기계구입자금 (원화)(569)	51	47	1
축산발전기금대출금	가축계열화(28)	555	70,079	126
축산발전기금대출금	가축시장육성(29)	38	157	4
축산발전기금대출금	가축진료시설(31)	1	3	3
축산발전기금대출금	계란가공및집하장(42)	20	16,123	806
축산발전기금대출금	관광농원및휴양단지(58)	21	4,016	191
축산발전기금대출금	규격돈생산촉진사업(76)	8	5,602	700
축산발전기금대출금	기타가축육성(102)	3,131	58,121	19
축산발전기금대출금	기타특별대책(119)	221	339	2
축산발전기금대출금	낙농관련시설(122)	718	1,273	2
축산발전기금대출금	낙농진흥회설립및운영지원 (123)	2,229	55,598	25
축산발전기금대출금	농촌경제활성화(179)	1	-	0
축산발전기금대출금	닭경쟁력강화(187)	2,849	150,128	53
축산발전기금대출금	도축도계시설(196)	37	7,412	200
축산발전기금대출금	동물약품GMP(198)	3	710	237
축산발전기금대출금	돼지경쟁력강화(199)	8,677	323,941	37

계 정 명	계 정 과 목	대출건수 (A)	대출잔액 (B)	평균대출금액 (C=B/A)
축산발전기금대출금	부화장시설(228)	4	249	62
축산발전기금대출금	브랜드육육성(229)	208	28,207	136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사료용벤티수거기(233)	121	98	1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사료원료수입자금(235)	20	20,535	1,027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사료작물SILO시설(237)	313	273	1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사료제조시설(238)	294	14,141	48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선도전업양축가지원(269)	420	10,977	26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수매비축사업(282)	-	-	0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식육유통센터(287)	5	937	187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식육이동판매차량(288)	1	18	18
축산발전기금대출금	가축방역관련경영안정자금 (310)	7,175	102,930	14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양축농가지원(311)	48	32	1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오리도축가공시설(323)	20	17,960	898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원유구입자금(330)	1	1	1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육가공장지원(337)	14	7,612	544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재해복구(379)	1,096	5,081	5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전문종돈육성(393)	103	40,015	388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젖소경쟁력강화(406)	8,079	129,744	16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408)	7,189	62,598	9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조합특화사업(409)	44	111	3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종계장시설(411)	-	-	0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종돈장시설(413)	6	136	23
축산발전기금대출금	LPC, 오리도축가공장, 도매 시장, 공판장운영활성화	18	21,004	1,167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직거래매취사업(436)	4	1,000	250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축사시설개선(457)	1,314	10,588	8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축산기업경영자금(464)	6	4,639	773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축산기자재생산(465)	16	2,483	155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축산단지조성(466)	2,101	158,750	76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축산물공판장(467)	7	767	110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수출 및 유가공업체시설지 원(469)	22	7,308	332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축산물판매업소지원(471)	949	49,513	52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축산업협동조합육성(473)	161	254,535	1,581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축산위생시설지원(475)	64	10,499	164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축산종합처리장(476)	24	31,600	1,317
원화표시차관대출금	농업기계화(서독2차)(165)	1	-	0
원화표시차관대출금	농업기계화(AID)(167)	1	1	1
원화표시차관대출금	농업기계화 (OECF1차)(168)	4	2	1
원화표시차관대출금	농업기계화 (OECF2차)(169)	17	17	1
원화표시차관대출금	농업기계화회전 (OECF1차)(170)	-	-	0
원화표시차관대출금	농업기계화회전 (OECF2차)(171)	5,260	14,403	3
원화표시차관대출금	서독1차농업육성(264)	2	4	2

계 정 명	계 정 과 목	대출건수 (A)	대출잔액 (B)	평균대출금액 (C=B/A)
원화표시차관대출금	서독2차창고(267)	141	92	1
원화표시차관대출금	AID창고(522)	21	312	15
세은차관대출금	세은3차(273)	14	8	1
세은차관대출금	세은4차(274)	16	19	1
세은차관대출금	세은회전(275)	4	6	2
농업개발자금대출	개량곳간(34)	3	1	0
농업개발자금대출	농어촌부업단지조성(152)	16	35	2
농업개발자금대출	농어촌지역종합개발(156)	2	2	1
농업개발자금대출	농업기계화(164)	7	11	2
농업개발자금대출	농업기반조성(172)	3	3	1
농업개발자금대출	농촌환경개선(182)	3	1	0
농업개발자금대출	도정공장시설개선(195)	3	4	1
농업개발자금대출	새마을종합개발(259)	2	2	1
농업개발자금대출	소득전략작목(276)	52	59	1
농업개발자금대출	영세농자립지원(318)	5	6	1
농업개발자금대출	재해대책등기타(378)	6	3	1
농업개발자금대출	표고버섯재배(493)	2	2	1
농업개발자금대출	복합영농 (기타소입식)(572)	11	8	1
농업개발대출금	복합영농(222)	20	16	1
농업개발대출금	생산기반(260)	1	1	1
농업개발대출금	생산시설(261)	-	-	0
농업개발대출금	유통시설(334)	1	2	2
농업개발대출금	작목입식(368)	1	-	0
농가특별자금대출금	농가사채대체지원(129)	930	380	0
농가특별자금대출금	사채대체저리자금(240)	7	4	1
특수사업지원자금	가축계열화(28)	5	7,262	1,452
특수사업지원자금	농업기계화(164)	49	10,573	216
특수사업지원자금	물류표준화(208)	7	45	6
특수사업지원자금	유통시설보완(335)	9	509	57
특수사업지원자금	육가공장지원(337)	1	1,042	1,042
특수사업지원자금	직거래매취사업(436)	2	2,000	1,000
특수사업지원자금	채소생산유통지원(441)	9	1,043	116
특수사업지원자금	채소유통활성화(442)	3	50,000	16,667
특수사업지원자금	축산물공판장(467)	1	188	188
특수사업지원자금	축산물판매업소지원(471)	1	454	454
특수사업지원자금	축산위생시설(474)	3	683	228
특수사업지원자금	축산폐수시설(477)	2	294	147
특수사업지원자금	한우특화사업(497)	2	2,200	1,100
특수사업지원자금	화훼공판장건설(511)	2	2,581	1,291
특수사업지원자금	KFW3차공판장(525)	4	747	187

계 정 명	계 정 과 목	대출건수 (A)	대출잔액 (B)	평균대출금액 (C=B/A)
특수사업지원자금	"LPC 공판장운영활성화" (529)	7	10,530	1,504
특수사업지원자금	OEFC(KO-58)(535)	3	10,063	3,354
특수사업지원자금	농산물물류센터(542)	6	38,939	6,490
특수사업지원자금	육가공업체시설지원(591)	1	1,500	1,500
축산자금대리대출금	가축계열화(28)	4	1,644	411
축산자금대리대출금	가축시장육성(29)	40	2,446	61
축산자금대리대출금	가축인공수정소설치(30)	1	245	245
축산자금대리대출금	계란가공및집하장(42)	1	80	80
축산자금대리대출금	관광농원및휴양단지(58)	2	608	304
축산자금대리대출금	기타가축육성(102)	9	953	106
축산자금대리대출금	낙농관련시설(122)	19	17,169	904
축산자금대리대출금	낙농진흥회설립및운영지원 (123)	3	1,258	419
축산자금대리대출금	닭경쟁력강화(187)	6	1,679	280
축산자금대리대출금	도축도계시설(196)	1	210	210
축산자금대리대출금	돼지경쟁력강화(199)	6	637	106
축산자금대리대출금	사료제조시설(238)	13	15,336	1,180
축산자금대리대출금	식육유통센터(287)	-	-	0
축산자금대리대출금	젖소경쟁력강화(406)	12	1,546	129
축산자금대리대출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408)	6	212	35
축산자금대리대출금	조합특화사업(409)	1	150	150
축산자금대리대출금	축산단지조성(466)	4	483	121
축산자금대리대출금	축산물공판장(467)	7	3,934	562
축산자금대리대출금	축산물비축시설(468)	1	100	100
축산자금대리대출금	축산물판매업소지원(471)	138	22,526	163
축산자금대리대출금	축산업협동조합육성(473)	-	-	0
축산자금대리대출금	축산위생시설지원(475)	3	728	243
축산자금대리대출금	축산종합처리장(476)	9	16,012	1,779
축산자금대리대출금	축산폐수처리시설(478)	2	26	13
축산자금대리대출금	한우경쟁력강화(495)	15	848	57
축산자금대리대출금	한우특화사업(497)	1	149	149
		3,126,981	23,363,659	7

< 부록 3 >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개방방안

1. 주요 고려사항

가. 취급금융기관 선정방법

- 전국 규모의 점포망을 갖춘 은행 등 금융기관 중에서 취급금융기관을 선정함.
 - 선정된 금융기관은 농업정책자금관리단과의 계약에 의해 개방자금의 취급금융기관으로서 업무를 취급
 - 지방은행의 선정은 추후 개방효과를 점검한 후 추진

나. 취급금융기관 선정기준

- 취급금융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기준의 객관성은 높게 유지하며, 금융기관 일반사항, 농업정책금융의 전문성, 농업인의 편의성, 정부예산의 절약가능성 등 4개 선정기준을 종합 심사하여 취급금융기관을 선정
 - 4개 선정기준은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심사하고, 세부항목별로 수(100%), 우(90%), 미(70%) 등 3단계로 평가
- 금융기관 일반사항(20점)은 자본적정성(10점)과 농업정책금융 취급의 지 및 공익목적의 사업수행 경험(10점)에 의해 평가
- 농업정책금융의 전문성(25점)은 농업정책금융 취급실적(15점)과 여타 정책금융 취급실적(10점)에 의해 평가
- 농업인의 편의성(25점)은 농촌지역 점포수(15점)와 농업대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10점)에 의해 평가
- 정부예산의 절약가능성(30점)은 이차보전 기준금리 산정을 위한 신청 금융기관 대출의 과거 3년간 평균금리(10점), 이차보전 적용금리

산정을 위한 가산금리(10점), 취급수수료율의 적정성(10점) 등에 의해 평가

다. 자금취급한도

- 개별 취급금융기관의 자금취급한도는 제한하지 않고 상호 경쟁에 의한 시장 확대를 유도함.
 - 분기별로 계획금액의 30%를 신규 취급금융기관 전체에 배정하되, 전 분기 실적에 따라 배정규모를 조정
- 국고자금 및 금융기관 자체자금을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취급업무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음.

라. 채권보전방법

- 농협에 대해서는 기존제도를 적용하고 신규취급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취급금융기관이 농신보의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출제도 개선으로 인한 신용경색 가능성을 최소화함.

마. 농신보 이용여부

- 신규취급금융기관이 별도의 기금을 출연하지 않고도 농신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함.
 - 현행 기준에 의할 경우 신규취급금융기관의 출연금 부담이 과중하므로 당분간 별도의 기금 출연 의무를 면제함.

바. 이차보전방법

- 금융기관 자체자금 사용분에 대해서는 적용금리와 정책금융금리간의 차이에 의한 손실을 보전함.

사. 취급수수료 결정

- 현 대출취급수수료 1.5%를 상한으로 하여 입찰방식에 의해 신청금융기관이 제시한 취급수수료율에 의해 취급수수료를 결정함.
 - 입찰방식에 의해 개별 금융기관이 제시한 취급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함.

2. 주요 일정

- 설명회 개최: 2004년 11월 ~ 12월
 - 참석대상: 전국 규모의 점포망을 갖춘 금융기관
- 취급금융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2004년 12월 ~ 2005년 1월
 -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
 - 농업정책금융 취급을 원하는 금융기관의 신청 접수
 - 취급금융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취급금융기관 준비기간: 2005년 2월 ~ 3월
 - 신규 취급금융기관별 자체 직원교육
 - 농업정책자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취급금융기관 업무개시: 2005년 4월 이후
 - 취급금융기관별 업무실태의 지속적 점검